

西獨의 社會保險法體系

金 學 洙*

第 1 章 總 說

第 1 節 西獨社會保險의 沿革

西獨의 社會保險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體系의 完成은 비스마르크 時代에야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 나라의 保險制度의 發展은 世界의 모범이 되기에 이르렀다.

1881年 11月 1日 비스마르크 宰相의 鼓舞下에 獨逸皇帝 빌헬름 1世는 要扶助者의 保護擴大(Hilfsbedürftigen Größere Sicherheit)란 刺令을 發布하는 가운데서 社會保險制度의 確立이야말로 基督教國民生活의 倫理的 基礎에 立脚한 모든 公共體의 가장 崇高한 任務중의 하나(eine der höchsten Aufgaben eines jeden Gemeinwesens, welches auf den sittlichen Fundamenten eines christlichen Volkslebens steht)라고 宣言했다.

이어 1883년에 疾病保險法, 1884년에 災害保險法 그리고 1889년에 勤勞者年金保險法이 帝國議會에서 각각 通過를 봄으로써 獨逸이 世界 最初의 社會保險國家가 되고 장차 많은 다른 나라의 模範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 세개의 社會保險法은 그후 帝國保險令(RVO)으로 統合을 보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11년에 職員(公務員) 保險法, 1923년에 鑛山을 위한 帝國鑛夫保險法, 1927년에 失業保險法 그리고 1957년에 農民老令扶助法이 각각 通過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大戰後 1957년의 年金保險法, 1963년의 災害保險法, 1969年 6月 25日 또한 1972年 5月 31日의 勞動促進法(AFG)에 따른 失業保險 등이 根本的인 改正을 보게 되었다. 이후 疾病保險의 改正은 一部分에 그치고 있어, 社會法典(Sozialgesetzbuch)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속에 全社會法이 統合되어 編纂되어야 할 課題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이 社會保險은 오늘날 西獨에 있어서는 社會的弱者의 保護(Schutz der sozial Schwachen)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國民層의 保護(Schutz fast der gesamten Bevölkerung)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第 2 節 社會保險의 構造—機關—

西獨에 있어서 社會保險은 特別한 保險運營主體(機關)가 있고 또 여러가지 保險事故로 細分되어 많은 保險分野로 나누인다.

西獨의 社會保險機關(Versicherungsträger)은 據出金を 徵收하고 保險事故(保險에 加入된 危險)가 發生하였을 때에 保險給與을 支給한다. 이 保險機關은 公法人 또는 公法上의 施設(Körperschaften oder Anstalten des öffentlichen Rechts)로서 國家의 監督下에 保險法을 執行하며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單純한 私法上의 法人體(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와는 區別된다.

保險機關의 最上部에는 意思決定機關으로서의 代表總會와 執行機關으로서의 理事가 있으며 이들은 多數決原理에 따라 互選된다. 다만, 失業保險에 있어서는 行政協議會가 있어 上部로부터 任命된다.

* 全北大學校 法大學長

常務理事는 最高業務執行者(Geschäftsführer)로서 專務理事(Direktor)라고 부르며 業務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代表總會는 보통 被保險者와 使用者 半半으로 選出되며 保險機關의 定款을 決定하며 理事를 選出한다.

保險機關은 原來 聯邦組合(Bundesberbänden)으로 結合되어 있으나 強制疾病保險은 여전히 州組合으로 結合되어 있다.

保 險 分 野	保 險 機 關	保 險 事 故	給 與 形 態
疾病保險	疾病保險金庫	疾病, 解產, 死亡	健康保護, 疾病扶助, 母性保護, 葬儀費
災害保險	同業組合, 自己事故保險機關	通勤途上の 災害와 職業疾病을 포함한 作業災害	災害豫防, 治療行爲, 營業扶助, 傷病者 및 遺族年金
手工業者를 포함한 勤勞者의 年金保險, 公務員職員の 年金保險	州保險廳, 海員保險金庫, 聯邦鐵道廳, 公務員職員聯邦保險廳	職業 및 營業不能, 老齡, 死亡	就業能力的 維持, 改善 및 回復을 위한 건강 조치, 被保險者와 遺族의 年金
鑛夫年金保險	聯邦鑛山廳	職業 및 營業不能, 老齡, 死亡, 職業能力的 減退	上 同
失業保險	聯邦勞動廳 (勞動官廳)	失業, 勞動時間短縮, 營業休止	就業對備, 勞動紹介, 職業形成促進, 失業補償 및 扶助, 就業短縮補償, 失業豫防 및 失業沮止
農夫의 老齡扶助	農夫老齡金庫	營農不能, 老齡死亡	健康維持對策, 被保險者, 과부 및 홀아비 老齡補償

第 3 節 社會保險의 法的根據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西獨聯邦共和國에는 綜合的인 社會保險法典이 없다. 社會保險에 관한 重要한 法規定들은 帝國保險令(RVO)속에 規定되어 있으며, 이 諸規定은 6卷으로 되어 있는 바, 保險令 第1卷에는 總則規定, 例를 들면 保險金請求의 時期 및 消滅에 關한 規定이 들어 있고, 第2卷에는 社會疾病保險, 第3卷에는 社會的災害保險, 第4卷에는 勤勞者의 年金保險, 第5卷에는 諸保險機關의 相互關係, 第6卷에는 保險機關이 어떤 方法으로 給與諸請求權을 確認하고 承認해야 하는가 등이 規定되어 있다.

公務員(職員)의 年金保險은 職員保險法(AVG)에 規定되어 있고, 失業保險은 勤勞促進法(AFG)에 規定되어 있다.

第 4 節 各種保險의 一般規定(總則)

保險廳(Versicherungsämter)은 國家나 各級行政區域을 基準으로 設置된다. 이 保險廳은 總體的인 社會保險의 情報를 提供하고 健康對策을 위한 年金保險을 권장하고 年金保險金을 받아 들이며 保險證書를 交付하고 一定한 保險機關에 대한 監督을 行한다(帝國保險令 第36條以下, 1324條, 1613條).

保險給與는 오직 申請이 있을때에 限하여 支給되나 災害保險은 申請없이도 可能하다(帝國保險令 第1545條). 保險機關은 書面審査에 依하여 定規的으로 保險給與를 決定한다. 支給된 保險給與의 返還請求는 다만 例外的으로 許容된다.

우리는 社會保險을 우선 被保險者가 法律規定에 따라 하나의 法的請求權(法的請求權을 가진 給與)을

갖는가, 아니면 그와 같은 法的請求權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保險機關의 羈束裁量에 따른 給與(Kannleistung=Ermessenleistung)를 決定할 수 있는가에 따라 區分할 수 있다. 被保險者는 大部分의 給與例를 들면, 醫療, 療養 또는 年金保險 災害保險, 失業 등의 給與에 대한 法的請求權을 갖는다. 그와 反對로 裁量給與 例를 들면, 病院의 看護, 年金保險에 의한 療養등과 같이 性格上 疾病의 態樣과 輕, 重이 考慮되어야 하는 給與는 그 承諾 혹은 拒否가 保險機關의 裁量에 依存한다.

이와같이 法的根據에 依하여 支給되는 給與를 우리는 法律上의 給與(gesetzliche Leistung) 혹은 通常給與라 부르고, 反面 극히 드문 境遇이긴 하나 保險機關의 定款에 따라 支給되는 給與는 附加支給(Mehrleistung) 혹은 追加支給(zusätzliche Leistung)이라 부른다.

病院內의 看護, 醫師의 醫療行爲 등은 現物給與(Sachleistung)이며 年金 및 疾病保險의 罹病補助金은 現金給與이다. 疾病保險(健康保險)에 있어서는 財政上, 現物給與가 壓到的이고, 年金, 災害 및 失業保險에 있어서는 現金給與가 壓到的이다.

第 2 章 疾病保險

第 1 節 總 說

I. 社會疾病保險의 長點

社會의 疾病保險은 被保險者(보통 勤勞者)와 그의 扶養家族(보통 共同加入者)이 社會保險上의 災害를 입었을 때 이들을 그 災害로부터 保護한다.

- 1) 疾病
- 2) 母性保險(妊娠, 分娩) 및
- 3) 葬儀(火葬)

疾病保險은 現物給與와 現金給與를 併行한다. 現物給與는 例를 들면 醫師의 治療行爲, 投藥, 看護 등이다. 現金給與는 勞動不能의 경우 療養補助, 分娩의 경우 母性保護, 埋葬給與 등이다. 疾病保險에 있어서 거의 모든 給與는 法律上의 請求權이 있다.

이외에 健康保護措置에 의한 疾病의 豫防이 있는바 例를 들면 休養 혹은 休暇등이 그것이다.

現物給與는 오늘날 高度로 發達한 疾病의 豫防, 診斷, 및 治療에 있어서 醫學의 새로운 位置에 따라 그 成果가 크다. 現物給與는 오늘날 一般的으로 被保險人口의 健康을 增進시키고 平均壽命을 延長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疾病에 걸린 者는 우선 所屬員(家族, 親戚 또는 同僚)의 看護를 要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는 또한 醫師의 治療 및 投藥手段등을 必要로 한다. 따라서 一般個人은 그가 만일 疾病保險에 加入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 過度한 財政的 負擔을 지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家庭의 經濟的 파탄까지도 免치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長期的 勞動不能은 그에게 莫大한 所得의 損失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느 누구도 疾病扶助請求權을 갖는 效果의인 疾病保險의 保護를 斷念할 수가 없다.

또한 疾病保險은 長期的인 重病이나 흔히 再發하는 疾病의 경우 그의 모든 治療費用을 負擔한다. 즉 疾病保險은 또 療養補償의 支給을 通하여 거의 모든 所得上의 損失(休業의 경우)을 補償한다. 이 經費는 疾病保險이 負擔하게 되는데, 그 理由는 大部分의 健康한 被保險者들이 共同으로 保險料를 支拂하기 때문이다. 이 疾病保險은 따라서 하나의 保險共同體(Versicherungsgemeinschaft)로서 尙장 健康하여 좀처럼 疾病에 걸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利點을 갖는데, 그것은 그가 장래에 항상 健康할 것이며 어떠한 疾病事故를 當하지 않는다고 壯談할 수 없기 때문이다. 疾病保險은 健康한 被保險者나 동시에 共同被保險者(保險料가 없음)로서의 그의 家族이 일단 重大한 疾病에 걸렸을 때에는 그 負擔의 全額을 支拂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가 保險에 加入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 혼자서 莫大한 金錢上의 負擔을 甘受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우기 그가 가진 돈이 없을 때에는 自己 또는 家族의 病으로 破滅할지도 모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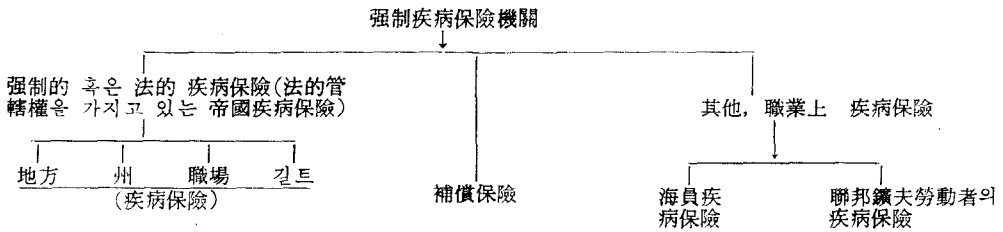
다.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社會的 疾病保險에 加入하지 않을 家長이 있을 것인가? 특히 많은 子女들을 가지고 있는 家族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때문에 오늘날 西獨國民의 88%가 社會疾病保險에 加入하고 있고 約 10%의 富裕層 國民만이 個人(私的) 疾病保險에 加入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 필요가 있다.

被保險者는 醫療免許를 所持하고 있는 各種 醫師나 齒科醫師중에서 自由로 選擇할 수 있다. 疾病保險은 自由選擇한 病院에서의 治療費까지도 直接 支出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보통 疾病保險機關은 醫師, 齒科醫師, 病院 및 藥師들과 契約를 締結하여 醫療事業을 行한다.

西獨에 있어서 社會疾病保險⁽¹⁾의 總支出額중 約 85%가 疾病扶助, 約 5%가 母性扶助, 約 2%가 葬儀費, 約 6%가 運營費, 그의 非常支出이 2%로 되어 있다.

II. 疾病保險의 種類

西獨聯邦共和國과 西伯林州에 있어서의 法律上(強制)疾病保險은 매우 強力하게 組織되어 있다. 疾病保險은 1900年頃부터 그 機構上에 있어서나 財政上에 있어서 獨自의인 保險機關에 의하여 實施되어 왔다. 다만 1911年 1月 1日로서 州의 疾病保險은 없게되고 그것을 聯邦이 統合하게 되었다.



III. 適用法規

가장 重要한 法律規定은 帝國保險令(RVO) 第 2 卷에 規定되어 있다. 그 外에 遵守規定은 補充保險의 保險條件과 함께 疾病保險의 諸規則(定款등) 및 疾病法令등이 있다.

第 2 節 疾病保險 加入資格者

I. 疾病保險에 있어서 被保險者 그들

우리는 위에서 疾病保險에는 強制保險加入者와 極少數의 任意保險加入者가 있다고 했는데 強制保險加入은 法律로 加入을 強制받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強制保險集團以外에 法律이나 要請에 의하여 保險義務가 課해지지 않는 集團, 예를 들면 官吏등이 있으며 이들은 一般의으로 社會疾病保險에 自由로 加入할 資格은 있다.

強制保險의 適用을 받는 事業에서 脫退한 者는 一般의으로 任意的인 再保險에 加入할 權利가 있음은 물론이다.

生業에 從事하는 主婦나 靑少年들은 保險加入義務가 없으나 거의 全部 家族所屬員으로서 共同加入을 하고 있다. 그러나 保險料는 負擔하지 않는다.

疾病으로부터 國民의 保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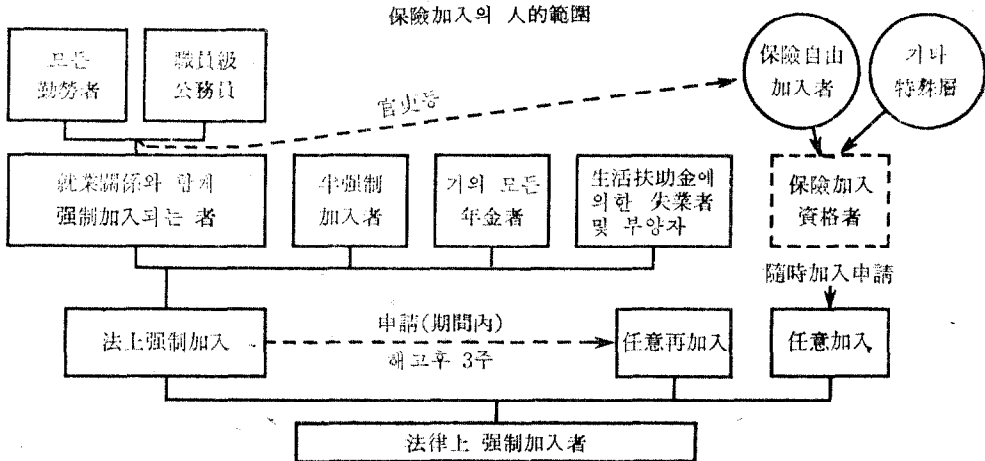
88.5%가 疾病保險에 加入				民營疾病保險 10.2%	未加入者 1.3%
強 制 保 險	任 意 強 制 保 險	家 族 共 同 加 入			
勤勞者 27.3% 年金者 12.4%	9.9%	37.6%			

자료: 西獨社會白書(1970)

(1) 1971年의 社會的 疾病保險金の 總支出額=28.5拾億 DM, 1975年은 41拾億 DM로 豫想(1971年 西獨社會白書)

II. 強制保險에 加入해야 할 人的集團

1. 概 觀



帝國保險令(RVO) 第165條, 166條에 依據하여 保險이 強制되는 者는

- a) 徒弟를 包含한 모든 勤勞者.
- b) 徒弟(修習生)을 포함하여 一定한 勤務年限⁽²⁾을 갖는 모든 職員.
- c) 그의 年勤勞所得이 一定한 限度⁽³⁾에 있는 小數의 自營業者集團, 例를 들면 藝術家, 音樂家, 音樂教師等. 但 農夫는 1972年 7月 1日부터 加入.

d) 모든 年金保險加入者는 그가 勤勞者나 失業者 혹은 特別한 方法으로 法律上 疾病保險에 加入한 境遇가 아닌 限, 年金申請權이 없다.

e) 失業者로서 勞動官廳으로 부터 失業給與등 失業扶助金 혹은 教育 및 負擔償還으로 인한 生活扶助費를 얻는 者에 대하여는 第7章 7節을 參照바람.

2. 保險加入義務가 있는 勤勞者들의 注意點

勤勞者와 職員(勤勞者로서의)은 그들이 使用者에게 人格의으로 從屬되어 있다는 事實, 다시 말하면 그들은 使用者의 指示에 따라야 하고 대부분 一定한 勞動時間에 拘束되지 않으면 안되는 하나의 就業關係(Beschäftigungsverhältnis)에 있기 때문에 自營業者와 區別된다. 原則的으로 西獨聯邦共和國이나 西伯林에서 職業에 從事하고 있는 者는 國籍(領土主義)에 關係없이 疾病, 年金 및 失業保險에 加入해야 한다. 疾病, 年金 및 失業保險의 加入強制는 國內·外를 가리지 않는다.

a) 덴마크, 希臘, 英國,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폴란드, 유고 및 터키 뿐 아니라 그의 歐洲經濟共同體(EWG)의 諸國에 잠정적으로 就業하고 있는 경우

b) 外國에 있는 西獨會社에 잠정적으로 就業하고 있는 경우등

그러나 이런 경우 果然 疾病, 年金 및 失業保險에 있어서 勤勞者가 加入義務가 있고 또 使用者가 當該疾病保險給與를 照會해야 하는가는 疑問이 남아 있다.

III. 疾病保險의 強制適用을 받지 않는 者(帝國保險令 第168條-175條).

法律規定에 依據 또는 申請에 依하여 原則的으로 保險義務範圍에서 除外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a) 官吏, 準官吏(Beamtenähnliche), 職業軍人, 期限附上의 軍人등과 같이 疾病의 경우 그의 使用主

(2) 1972年 1月 1日부터 이후부터 年 18,900DM, 月 1,575DM. 職員이 이 法의 適用에서 벗어나는지의 與否를 심사할 경우 追加勞動에 있어서 報酬와 함께 配遇者 및 子女手當은 計算되고 있지 않다(年金保險의 각출계산한계는 75%이다).

(3) 1972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年 18,900DM, 月 1,575DM이다.

(또는 上司)에게 扶助請求權을 갖는 者 및 그의 유사한 者.

b) 아직 勤勞者로서 取扱되지 않는 短期 雇傭人⁽⁴⁾

c) 사소한 廉業者⁽⁵⁾

d) 學問研究上の 就業이나 기타 아르바이트學生(Werkstudent)

e) 그외에 申請에 의한 경우인 바 예를 들면 年金加入官吏가 退職金(Ruhegelt)을 타고 保險適用除外 申請을 내는 경우가 이것이다.

IV. 任意로 保險에 加入할 수 있는 者

任意로 社會疾病保險에 加入할 수 있는 者는

a) 任意加入에 의한 一定한 保險有資格者, 예를 들면 高級官吏등으로서 애초부터 保險이 強制되지 않는 者.

b) 任意로 保險에 再加入하는 者로서 以前에 保險義務關係에서 탈퇴한 者.

任意的인 保險構成員資格은 保險料의 未拂이나 保險關係의 脫退로써 終了된다.

1. 以前에 疾病保險關係가 없는 者로서 保險에 加入할 수 있는 者(RVO 176條).

保險資格이 있는 者가 申請하면 當該 所管疾病保險機關은 構成員으로서 받아들일 義務가 있다. 特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保險加入資格이 있다.

1) 保險加入義務가 없는 勤勞者: 예를 들면 管理 혹은 아르바이트學生등

2) 企業內에서 固有한 勤勞關係가 없이 從事하는 使用主의 家族構成員

3) 自營業者 및 기타 企業主

이러한 者들도 總收益이 一定한 限界⁽⁶⁾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加入이 許容되지 않는다.

2. 保險關係에서 脫退한 者중 再保險에 加入할 수 있는 者(RVO 313條).

從來의 疾病保險에서 脫退한 후 任意로 再保險에 加入하면 從來의 保險關係는 繼續된다.

다음과 같은 境遇는, 특히 任意的인 再保險資格(Weiterversicherung)이 있다.

1) 義務保險關係에서 脫退한 者⁽⁷⁾

2) 故人이 死亡時까지 保險에 加入해온 경우의 미망인 및 홀아비, 대개의 경우 과부는 任意的인 再保險에 대한 關心을 갖지 않는바, 그 理由는 그 女는 보통 年金者로서 年金保險의 費用으로 疾病保險에 加入했기 때문이다.

3) 被保險者의 配偶者가 離婚하는 경우, 保險關係는 離婚判決로서 消滅한다.

以上の 경우 再保險申請은 3週以內에 해야 한다. 다만, 義務保險은 從來 一定한 期間동안 保險關係가 있었다는 것을 條件으로 한다.

第3節 社會疾病保險의 給與

I. 基本的支給要件

當該 疾病保險金庫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保險給與를 行한다.

(1) 疾病, 妊娠病苦, 分娩 혹은 死亡등의 保險事故가 發生했을 때.

(2) 保險事故發生時에 있어서의 保險加入者일 것.

(3) 一定한 保險給與請求가 있을 때.

그러나 몇몇의 保險給與의 경우는 보다 嚴格한 要件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바, 예를 들면 被保險

(4) 보통 3個月以下의 被傭者 혹은 年間 75日以內의 非勤續被傭者

(5) 사소한 廉業은 1972년에 月所得 262.50DM以下의 者로 定하고 있다.

(6) 1972年以來 年總 18,900DM의 收益을 올리는 者, 但 配偶者나 家族手當은 참작하지 않는다. 倉業主로서 最初 3個月以內에 있어서의 所得制限이 없다.

(7) 補充金庫는 被保險者가 脫退를 宣言하지 않았을때에는 一般的으로 法規定에 따라 申請없이 任意로 疾病保險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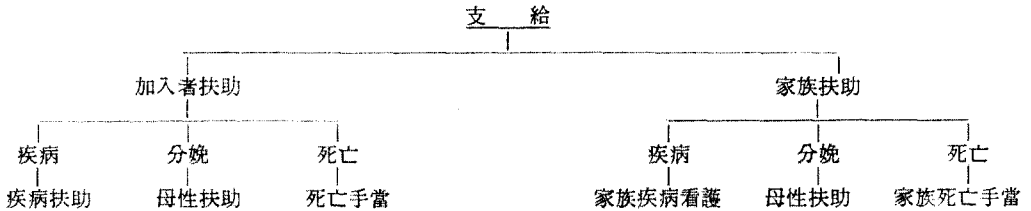
者는 그가 勞働能力이 없을 때에만 疾病保險金의 諸求權을 가지는 경우가 이에 該當한다.

II. 社會保險에 있어서 給付種類

保險加入者에 대한 保險給與를 우리는 총체적으로 會員扶助金(Mitgliederhilfe); 또한 共同加入家族構成員에 대한 保險金支給을 우리는 上位概念으로서 家族扶助金(Familienhilfe)이라고 總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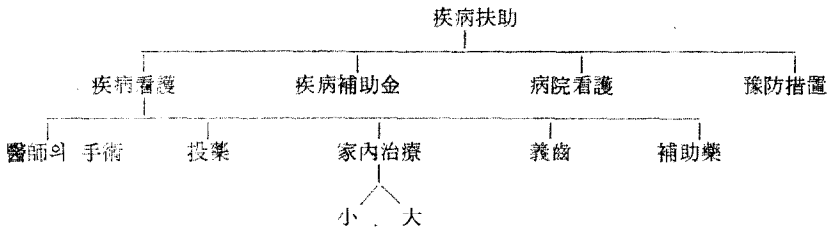
保險支給概況

以下에서 說明하는 3~6節까지의 保險金支給 概況은 다음 略圖와 같다.



III. 疾病의 경우 被保險者의 保險給與種類(疾病扶助)

1. 疾病扶助金은 어떻게 細分되는가를 다음에 본다.



2. 保險法上 疾病保險의 概念

自己가 病이 들었다고 느끼는 者는 一般的으로 社會保險法上의 疾病者로 取扱되나 保險諸求權이 있다고 看做되는 것은 그가 醫師의 治療를 要한다든가 아니면 그로 因한 勞働不能이 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客觀的으로 그는 身體的 이나 精神的인 異常者로 認定되어 疑心을 하기 始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 보통 疾病保險事故는 첫째 治療를 必要로 하는 病苦 다시 말하면, 身熱 이나 기타 疾病症狀이 나타날 때이다. 이 경우의 疾病은 出生以來의 치료가능한 病苦나 長期的인 예를 들면 小兒의 顎骨病이나 近親病등이 이런 경우이다. 疾病은 또한 皮膚관절탈구나 持久病도 포함된다. 알코올中毒者 등도 포함된다.

疾病保險에 있어서는 疾病의 原因은 問題되지 않으며 스포츠事故나 交通事故에도 疾病保險金은 支給된다.

疾病이라고 하는 保險事故의 發生에 있어서는 被保險者가 疾病의 開始即時 또는 相當한 期間이 經過하여서 비로소 勞働不能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被保險者가 단순히 治療를 받아야할 狀態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등은 重要치 않다. 왜냐하면 勞働不能이란 것은 아무 特殊한 保險事故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疾病看護의 概念

疾病看護는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治療行爲, 藥劑, 投藥, 補助藥, 義齒등을 포함한다.

疾病看護는 保險加入期間에 關係없이 行하여지며 또한 數年 혹은 10年등의 長期病苦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保險加入에서 脫退한 후에는 期間上 制限이 있다.

疾病看護는 充分하고도 合目的이어야 하며 이와같은 必要性的의 程度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高價의 治療行爲나 高價의 藥劑도 完全한 治療上의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疾病保險金庫가 負擔한다. 施療決定에 있어서 疾病의 輕·重은 社會的인 地位에 關係없이 參酌된다. 예를 들면 勤勞者나 支配人은 地位

에 相關없이 施療決定에 따르며 똑같은 施療請求權을 갖는다.

1) 醫師 및 齒科醫師의 醫療行爲(帝國保險令 182條 1,2項, 및 368條以下).

醫師의 治療行爲(齒科醫師의 治療行爲도 포함)는 疾病의 診斷, 治療 또는 療養이나 혹은 病苦의 輕減을 위하여 가장 새로운 醫療上的 知識을 合目的的이고도 充分히 動員하는 醫師(齒科醫師)나 그 補助員의 諸措置를 總括한다. 여기에는 또한 相談, 진맥, X光線, 往診 및 사소한 治療行爲도 포함된다.

傷病(疾病)에 걸린 被保險者는 指定醫師나 齒科醫師에 의한 治療를 請求할 法律上的 權利가 있다.

被保險者는 自己가 選擇한 醫師에게 診斷書를 提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診斷書는 曆年上 分期의 適用을 받는다. 醫療上的 分期는 4分期로 나누어 있고 緊急한 경우에 限하여 이의 適用이 免除된다(帝國保險令 188條).

만일 專門醫師의 治療를 必要로 할 때에는 當該醫師에게 委任狀을 交付(發付)한다. 만일 疾病이 一分期(3個月)內에 完治되지 못하여 다음 分期로 移越되는 경우에는 새로 診斷書를 交付해야 한다. 이런 경우 被保險者는 다시 다른 指定醫師를 自由로 選擇할 수 있다.

被保險者가 最小限 一分期內에 아무 治療나 病院의 看護를 請求하지 않으면 그는 醫療保險金庫에 返還되는 診斷書에 대하여 每分期當 10DM 혹은 最大限 30DM의 프리미엄을 얻게 된다(配偶者에 대하여는 第2章, 第3節, III, 5以下 參照할것).

2) 藥品은 無料인가의 問題(帝國保險令 182條 1項(Abs.), 182條 a)

藥品은 例를들면, 定劑, 軟膏, 반창고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藥品은 藥種商醫療法令에 따라 施與된다. 疾病金庫(保險社)는 이 藥品의 費用을 負擔할 義務를 진다. 그러나 官報에 따르면 被保險者는 費用의 20%, 많은 경우에는 적어도 2.50DM를 支拂하는 경우도 있으나 年金者, 重傷者, 罹病補助金등의 受領者는 이에서 除外된다.

또한 藥劑費用分擔은 治療行爲의 경우 災害(傷害)保險(第3章 2.3節)이나 戰傷者의 療養(第11章 5節) 및 母子扶助에 대한 費用에서는 除外된다.

3) 疾病保險金庫의 治療補助藥에 대한 支給額(帝國保險令 第182條 1項, 第193條)

좁은 意味에 있어서 治療補助藥은 例를 들면 入浴, 맛싸아지, 安靜, 붕대, 보조개, 보조싸개 등을 말한다.

疾病保險은 官報手數料를 포함한 사소한 治療補助藥⁽⁸⁾에 대한 費用을 負擔해야 한다(前項 參照). 보다 큰 治療補助品의 費用에 대하여 疾病保險은 一般的으로 補助(追加金)을 支給한다. 그리고 이러한 追加支給은 一般的으로 年金保險加入者(第6章 第3節 2의 4 參照)에게만 支給된다.

4) 補助品의 종류

補助品으로서는, 治療措置의 契約에 따르면 보통 身體補助器, 補聽器, 病者運搬車, 假髮, 整型靴등이 있다. 追加費用은 保險金庫가 疾病保險者나 年金保險者에 限하여 支給한다.

5) 義齒의 費用負擔

義齒, 齒冠, 補助齒등은 一般的으로 단지 追加金만이 支給되며 大的인 義齒의 경우 年金保險者의 경우에는 保險金庫는 共同支給한다(第6章 第3節 2의 4 참조).

4. 勞動不能者의 罹病給與(帝國保險令 第182條, 183條)

疾病保險法上的 疾病으로 勞動을 할 수 없는 勞動者는 喪失된 勞動賃金대신에 罹病給與金을 받는다. 이 罹病給與金은 失業給與金등을 代身한다(第7章 5, 6節 참조).

罹病給與金은 勞動者側의 立場에서 볼 때 보통 勞動不能後 7週가 되어야 支給되며 이 6週동안의 賃金은 使用者가 原則的으로 계속 支給해야 된다.

(8) 사소한 治療補助品은 보통 法規定으로 그 限界를 定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200DM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붕대나 눈가리개 등은 全額 支給된다.

退職할 年金者나 疾病保險의 任意加入者는 보통 罹病補助金을 받지 않는 바, 이들은 勞動不能의 狀態에 있긴 하지만 勤務狀態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1) 被保險者의 罹病給與金受領條件

罹病給與金을 받고자 하는 者는 疾病에 대한 保險事故를 當하였을 때 疾病金庫의 構成員 즉 疾病保險에 加入하여 있어야 되고 疾病으로 因한 勞動不能狀態에 있어서야 하며, 또 이 事實을 疾病保險金庫에 報告하여야 한다. 여기서 勞動不能狀態(arbeitsunfähig sein)란 것은 그의 最後에 行한 業務를 疾病때문에 더 이상 遂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疾病保險金庫는 勞動不能者가 治療를 要한다든가 또는 勞動不能狀態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勸誘(醫)를 통하여 鑑定을 시킬 수 있다. 使用者는 鑑定을 부탁할 수는 있으나 強要할 수는 없다(帝國保險令 第368條 6의 1項).

2) 疾病給與金(療養補償)의 액수

被保險者가 힘겨움게 扶養해야 할 家屬이 없으면 勞動能力의 상실 7週부터 前의 通常賃金의 75%만을 받는다. 被保險者가 힘겨움게 扶養해야 할 家屬이 1名 있는 경우에는 通常賃金의 79%를 疾病給與金으로서 받는다. 家屬이 2名이 딸린 경우에는 82%로 引上되며, 3名 以上인 경우에는 通常賃金의 85%를 支給받는다. 이리하여 疾病給與金은 이제 거의 從來의 純勞動賃金의 水準에 육박하게 되었으나 아직 이 以上을 넘을 수는 없을 것 같다.

疾病給與金은 勞動者에 있어서는 月給이 아닌 경우 5週間の 勞動日 다시말하면 作業場에서 週 5日의 日傭勞動을 5週間 한 때에 計上·支給된다. 따라서 事務員이나 其他의 被保險者는 曆에 따라서 疾病給與金을 받는 것이 되고 追加保險이 가능하다(補充金庫의 경우 AOK등).

通常賃金(Regelohn)의 計算은 最近의 4~5週 혹은 最近의 月曆에 따른 勞動 또는 勤務關係에 根據를 두고 있다. 따라서 만일 一個 勤勞者가 이 期間동안에 無斷缺勤을 한 경우에는 이 때문에 通常賃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通常賃金의 最高額數는 疾病保險金의 分擔金測定限界와 對應한다.⁽⁹⁾

用例: 례를 앓는 事務員 Artur Albers는 처음 6週間은 疾病事故동안이라도 계속하여 賃金請求權을 가지며 900DM로서 그의 婦人과 그의 두 아들을 扶養한다고 하면, 曆日에 해당되는 通常賃金은 900DM인 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30日=308DM로서 疾病給與金은 曆日로 보아 7週부터 30DM의 85%를 받게 되며 이것이 實質賃金에 依據한 最高額이 되는 것이다.

3) 疾病給與金の 起算과 期間

疾病給與金은 通常 勞動能力을 상실한 날로부터 7週間 다시 말하면 使用主에 의한 賃金이나 給料의 支給이 停止된 때부터 支給된다. 以後부터 疾病給與金은 失業給與金 대신 勞動不能에 대한 補償으로서 支給되게 되는 것이다.

疾病給與金은 原則적으로 期間의 制限없이 支給된다. 그러나 被保險者가 같은 疾病으로 勞動不能의 開始以來 3年以內에 계속적이든 간헐적이든 78週동안 疾病給與請求權을 行使하여 왔다면 이제 이 請求權은 새로이 3年이란 療養期間이 개시될 때까지는 없어진다.

이리하여 持續病은 最初 6週間の 實質賃金을 받고 그후 最長 72週間 疾病給與金을 받으며 그다음 새로이 3年동안의 治療期間이 設定되지 않는 限 그 이후부터는 年金을 받게 된다. 이것을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最長 3個年 동안 72週(78週-6週)는 疾病給與金			결국 새로 疾病給與金으로 됨
임금 또는 6週間	疾病給與金 (요양보상) 72週間	年金은 대개 職業 내지 所得不能에 따른 것 또는 社會扶助金으로 되어 있다.	
		年金은 대개 즉시 또는 72週以後 始作된다.	

(9) 1972=1975. -DM=52.50DM 曆日=73.50DM 日傭勞動(週 5日-勞動-) =61.25DM 職場勞動(週 6日 勞動)

4) 疾病補助金外的 年金 또는 기타 金錢上的 支給종류

위의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疾病給與金의에 이 疾病給與金의 期間을 短縮시키기 위하여 職業不能年金(Berufsunfähigkeitsrente)(第4章 第3節 3)이 支給되며 다만 例外的으로 疾病給與金과 職業不能年金이 同時에 支給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것은 年金者가 疾病給與金加入義務가 있는 職業에서 勞動不能이 되는 경우이다. 生業不能年金과 老齡年金이 결국 疾病給與金을 대신하여 지급되며 疾病給與金은 母性保險金과 過渡金(Übergangsgeld)도 支給한다(第4章 第3節 第3節).

5) 疾病給與金의 支給 停止 또는 消滅(帝國保險令 189條, 216條).

疾病給與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停止된다.

- (1) 被保險者가 勞動賃金을 받게 되는 때
- (2) 被保險者가 勞動不能을 3日로부터 7日以內(지역에 따라 다름)에 報告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疾病給與金은 被保險者가 축탁의사의 處方에 따르지 않는다든가 또는 故意로 暴行事件에 加擔한 경우에는 支給이 中止된다.

6) 勞動不能이 있은 후 6週까지는 賃金 또는 給料가 支給된다.

使用主는 賃金繼續支給法(LFZG)에 따라 勞動不能후 最初 6個月동안은 勞動者에게 계속하여 賃金을 支給해야 되는바 그 要件은 다음과 같다.

- (1) 勞動者가 疾病으로 勞動不能이 되며 社會給與負擔者들의 費用으로 治療를 하는 때.
- (2) 勤勞者가 重大한 過失로 勞動不能이 된 경우가 아닌 때.
- (3) 勤勞者가 短期 내지 사소한 일로 임시 고용된 경우가 아닌 때.

勤勞者는 勞動不能狀態를 使用主에게 지체없이 提示하여야 하고 勞動不能狀態의 發生 3日까지 醫師의 診斷書를 提出해야 한다.

事務員(職員)은 反對로 그의 使用主에게 不意의 障病가 있을 때 6週동안 勞動不能에 대한 給料全額을 계속 지급받는 請求權을 가지며 契約으로 이 期間을 더 길게 할 수도 있다.

職業訓練生도 勞動不能狀態가 發生했을 경우 最初의 6週間은 계속하여 賃金을 支給받는다(職業訓練法 第12條).

5. 病院看護의 時期와 그 期間(帝國保險令 184條)

疾病保險金庫는 請求에 따라 被保險者에게 계속제량下에 病院看護를 行한다. 疾病保險金庫는 그러나 緊急히 病院의 治療를 要하는 重大한 病人 경우 이것을 裁量으로써 拒否할 수 없고 받아들여 檢診해야 한다. 重大한 治療는 被保險者의 同意를 要한다.

病院의 看護行爲는 病院內에 있어서의 醫師의 治療行爲, 藥劑, 모든 補助品, 其他의 治療研究行爲, 居所, 運搬費를 포함한 諸看護行爲등을 포함한다.

被保險者는 指定病院, 居所, 職場宿所 및 其他 滯留地중에서 自己의 選擇에 따라 治療 및 看護를 받을 수 있다. 그는 다만 一般看護等級의 費用만을 부담한다.

病院看護는 78週후 포함하여 3年以內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疾病保險金庫는 期間의 制限을 두지 않고 소위 영여지급이란 形態로 病院看護를 行하는 것도 있다.

만일 78週後 病院看護請求權이 消滅하면 계속 保險加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病院⁽¹⁰⁾의 醫師의 治療와 特別治療의 費用은 保險金庫가 부담하게 된다. 其他의 費用은 보통 社會扶助로써 充當된다.

6. 疾病給與金은 病院의 看護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支給된다.

病院看護를 받고 있는 동안에 被保險人은 勞動不能의 경우와 같이 疾病給與金을 받는다.

7) 豫防措置의 重要性

疾病保險金庫는 豫防의 保健措置를 取하여야 한다고 1971年 7月 1日의 法으로 規定하여 놓았으며 滿

(10) Z. Zt. 매일 1DM 負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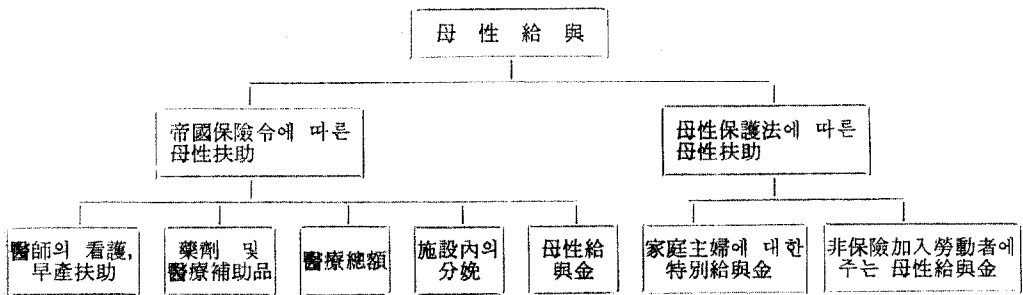
4歲까지의 幼兒에게는 특히 身體的 및 精神의 發展에 위험을 주는 疾病의 早期發見을 위한 無料診斷에 대한 請求權을 부여하고 있다. 婦女는 30歲부터, 男子는 45歲부터 無料豫防診療(진단)의 請求權이 있다. 이외에 保險金庫는 어린이의 治療도 行한다.

뿐만 아니라 療病保險은 또 治療行爲의 完了後 回復者에 대한 事後看護(Fürsorge für Genesende)도 할 수 있는바, 이것은 특히 療養所內에 있어서 療養期間도 포함한다(帝國保險法 第182條 2).

IV. 被保險者의 母性扶助

1. 疾病保險에 있어서 母性扶助에 따른 給與

스스로 保險에 加入한 어머니는 帝國保險令(2~6)에 따른 給與金을 받으며 다만 例外的으로 母性保護法에 따른 給與가 있다.



2. 被保險者의 帝國保險令에 따른 母性給與金의 수령 시기

帝國保險令에 따른 母性給與金의 請求權은 모든 被保險者가 가지나, 단 保險事故의 發生時期까지는 強制的인든 任意的인든간에 疾病保險에 加入되어 있어야 한다. (11)

임신·수태에 있어 現今 母性保護金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被保險者는 비록 그가 장기간 無報酬休暇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疾病金庫에의 加入의 強制를 받는다. 만일 被保險者가 다시 勤勞한 意思가 없는 경우에는 그는 分娩후 곧 勤勞關係를 解約告知할 수 있고 또한 強制加入關係는 끝난다. 따라서 너무 일찍 解約告知를 하면 母性保護金의 請求權을 잃게 되므로 注意해야 한다.

또한 分娩은 早產 및 死產인자라도 똑같이 保護받는다.

戶籍事務所가 母性扶助를 위하여 일단 發行한 出生證明書는 疾病保險金庫에 提出되며, 外國出生證明도 認定된다.

3. 醫師의 看護와 早產扶助의 成立

指定된 疾病保險醫에 의한 醫師의 看護는 妊娠婦나 生長兒가 겪는 保健上의 疾患의 豫防, 診斷 및 治療가 있다. 특히 妊娠중의 事前檢診등은 매우 중요한 保險醫療上의 事項으로 取扱되고 있다.

(1) 이것은 첫째, 可能한 限 일찍 疾病의 豫防을 行하고 둘째, 最少限 6週內에 그리고 最後 妊娠保護期間 2個月內에, 나아가 分娩後 入院期間과 分娩後의 6週 동안에 母性保護를 끝내자는 것이 그 目的이다.

(2) 育兒, 衛生, 豫防措置, 母性證書의 發給 및 諸般保護措置에 대한 相談

(3) 醫師의 治療를 통한 治療措置

被保險者는 疾病證書대신 醫師에게 疾病保險金庫가 發行한 母性保護證明書를 提出해야 한다.

早產扶助는 分娩과 助産의 扶助, 妊娠中의 扶助 및 산욕부와 新生兒의 保護등이다. 早產看護는 또한 豫防檢診도 포함된다. 分娩前 또는 分娩後의 일체의 藥劑 또는 補助品은 疾病保險金庫가 負擔한다.

4. 分娩의 경우 妊產母는 얼마의 費用을 保險金庫로부터 받는가의 문제

產母는 以上에서 말한 醫師의 治療, 看護 및 早產保護 및 그에 必要한 一切의 藥劑 및 補助治療用品

(11) 被保險者가 母性保護法에 따라 保護期間의 開始以前 最近 3週內에 強制加入에서 除外됨으로써 足하다(帝國保險令 第214條 12項).

외에 一定金額을 費用名目으로 받는다(pauschbetrag), 最低 50DM에서 最高 100DM까지이며 이것은 保險金庫가 잉여급여로서 지급하는 것이 된다.

5. 被保險者의 施設分娩을 要求할 수 있는 權利(帝國保險令 第199條)

被保險者는 疾病保險金庫가 指定한 施設외에 任意로 選擇하여 指定받은 分娩 또는 病院施設에서 看護를 받을 請求權을 갖는다.

產母(生後 6週間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산욕을 치르는)는 또한 私設分娩施設에서 分娩을 할 수도 있으나 그 費用은 다만 一般費用의 基準에 따라 保險金庫가 負擔한다.

6. 母性保護扶助金の 形態(帝國保險令 第200~200條d)

分娩을 原因으로 하여 給與申請에 의하여 支給되는 母性給與金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被保險者가 勤勞關係에 있으면 原則的으로 妊娠保護期間동안은 이제까지의 純賃金額과 같은 現行母性扶助金이 支給된다.

(2) 保險이 疾病給與請求權을 가지고 있고 母性給與金에 대한 條件이 純所得額에 다르지 못하는 경우 母性給與金은 母性保護期間동안은 疾病給與金の 額數로 支給된다. 이것은 특히 疾病給與請求權을 가지고 있는 失業者나 任意被保險者에게 適用하거나 혹은

(3) 이외의 被保險者에게는 150DM의 一時金額이란 母性給與金만이 支給된다.

就業禁止로 생기는 保護期間은 豫測의이거나 혹은 實際의인 分娩 6週前에 始作되려 分娩後에는 早産인 경우는 8週만에, 雙童兒分娩의 경우에는 12週間으로서 끝난다. 이 期間동안의 勤勞所得의 상실은 보통 現行母性給與金을 通하여 補充된다.

이제까지의 純賃金の 額數에 맞먹는 現行母性給與金을 받는 婦人은

(1) 母性保護期間(豫測分娩期日 前 6週)의 開始와 더불어 保護가 保障되어 있고, 勤勞關係下에 있거나 解約告知가 있었다라도 妊娠期間中 使用主로부터 特別게이스로 認定되어 있는 者.

(2) 過去 日曆으로 最少限 84日동안 保險料를 내왔고 豫測分娩前 10個月과 4個月사이에 있거나 혹은 勤勞關係가 成立하여 온 者 등.

日曆으로 最高額 25DM를 넘어서면 使用主는 母性給與金과 純勞動賃金間의 差額을 支給하지 않으면 안된다.

7. 母性保護法에 따른 母性給與金の 受領主體

例外的인 경우에 保險金庫는 母性保護法(MuSchG)에 따라 聯邦財源을 支出할 수 있는바 그 對象者는 다음과 같다.

(1) 家庭婦로 就業한 婦人에 대한 特別補助金으로서 그녀가 最少限 週 40時間 就業하고 妊娠 5個月후 主人으로부터 解約告知를 許可받은 경우(母性保護法 第12條).

(2) 法律上的 疾病保險金庫의 加入者가 아니어서 帝國保險令에 따른 給與를 請求할 權利가 없는 婦女勞動者에 대한 純勞賃額에 相當한 現行母性給與金을 支給하는 경우(母性保護法 13條 2項).

V. 構成員(保險) 死亡의 경우 埋葬料(帝國保險令 201條).

社會保險法上 一般的으로 遺族에게 支拂되는 埋葬料는 葬禮費用에 充當하기 위한 支出을 말하는데 被保險者의 死亡의 경우 死亡診斷書의 提出에 依한 申請으로 직접 葬禮를 行한 者에게 支出된다. 埋葬料는 日曆으로 計算한 純勞動賃金(基本賃金)에 있어서 最低賃金인 100DM의 20배까지 支拂하며 保險金庫는 이 金額을 追加給與金으로서 基本賃金의 40배까지 引上 支出할 수 있다.

VI. 家族構成員의 共同加入(家族扶助金).

家族給與金은 모든 給與에 대한 上位概念으로서 疾病, 出產 및 死亡의 경우 保險에 共同加入한 家族에게 支給된다. 被保險者는 保險事故 發生의 경우(질병, 분만) 疾病保險의 加入構成員이 아니면 안되며 給與請求書를 提出해야 한다.

1. 家族疾病看護나 病院看護를 받을 수 있는 家族의 範圍(帝國保險令 205條)

疾病保險金庫는 被保險者에게 대하여 배푸는 것과 똑같은 範圍內에서 疾病看護와 病院看護를 家族共同加入者들에게도 배푸기는 하지만 疾病給與金이나 家族給與金を 이들에게는 支給하지 않는다. 家族構成員들로서 그들이 스스로 保險에 加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家族員은 共同加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疾病看護에 대한 하나의 固有한 法的 請求權을 갖는다.

- (1) 扶養을 받을 權利가 있는 配偶者
- (2) 扶養을 받을 權利가 있는 適出子, 適出認知子, 養子, 被保險者가 扶養을 맡고 있는 子
- (3) 扶養을 맡겠다고 다루고 있는 의붓父親이나 의붓母親側의 扶養保障下에 있는 의붓자식(Stiefkinder)
- (4) 그의 扶養을 맡겠다고 주장하는 祖父母側의 扶養下에 있는 孫子
- (5) 疾病保險金庫의 定款이 定하고 있는 때에는 無償으로 看護義務를 지고 있는 養夫 또는 養母의 保障을 받고 있는 養子(Pflegekinder)

疾病保險金庫의 定款은 흔히 以上에서 列擧한 사람이외의 親戚이나 姻戚關係者를 病看護保險에 共同加入시키는 規定을 둔다.

어떤 경우든 配偶者만은 疾病保護證明書의 프리미엄을 被保險者에 주는 것과 똑같이 支給하나 아이들에 대하여서는 그와같은 프리미엄을 支給하지 않는다.

2. 家族 또는 母性給與金の 支給時期(帝國保險法 205條a).

被保險者는 또 疾病保險에 共同加入한 家族에 대한 母性扶助金を 取得한다. 이것은 특히 扶養을 받을 權利가 있는 아내와 딸에 適用되는 바, 이들이 아무 獨自의인 社會疾病保險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被保險者와 共同加入한 配偶者나 딸에게는 現物支출이 可能하다. 그러나 母性給與扶助金은 그것이 다만 1회에 35DM에 불과하고 個別疾病保險金庫의 定款에 따라 150DM까지 支給될 수 있는 잉여금여보다는 아주 적기 때문에 現金으로 支給되는 경우가 많다.

3. 家族이 死亡한 경우의 家族埋葬金額

配偶者, 一名의 아들 또는 家族共同體內에서 함께 사는 기타의 家族의 死亡의 경우에는 被保險者의 死亡時에 支給되는 埋葬金額의 半額으로 한다.

VII. 被保險者의 外國 旅行(出張).

休暇를 얻어 海外旅行을 하고 있는 동안 被保險者 및 그의 共同加入家族은 홀랜드,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그린랜드,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1973년에 數個 國家로 더 늘어났다)에서는 急性疾病을 맞는 경우 그곳에서 醫師의 扶助나 病院의 看護를 받을 醫療上의 請求權을 갖는다. 더우기 이들 나라의 法規定에 따라 西獨의 疾病保險金庫가 發行한 諸證明書を 提出하는 경우 疾病看護를 하여주도록 되어있다. 英國에 旅行하는 동안 急性疾病을 앓게 되면 醫療는 無料로 받을 수 있다.

第 4 節 疾病金庫의 管轄權

個別疾病保險加入者들이 各各 어느 保險金庫에 加入할 것인가 하는 것은 法律에 의하여 定하여진다(帝國保險令 225~258條).

諸地域疾病保險金庫는 기타 다른 強制疾病保險金庫(企業體疾病保險金庫, 組合(길트)疾病保險金庫, 農業疾病保險金庫)에 加入되지 아니한 모든 保險加入者들을 管轄한다.

企業體疾病保險은 疾病保險金庫를 設置한 職場의 勤勞者를 위한 強制疾病保險金庫이다.

組合(길트)疾病保險金庫는 一定한 手工業分野——地域적으로 다르기는 하나——의 強制保險加入者를 위한 強制疾病保險金庫이다.

農林疾病保險金庫에는 예를 들면 農林業勤勞者들이 加入하며, 聯邦鑛夫疾病保險, 海員疾病保險金庫등도 이의 管轄에 屬한다.

原來 地域, 企業體 혹은 組合體(길트)疾病保險金庫에 所屬된 者는 補充金庫(Ersatzkasse)의 構成員

이 되나, 그 경우에도 願에 따라 契約으로 補充金庫에 加入하는 것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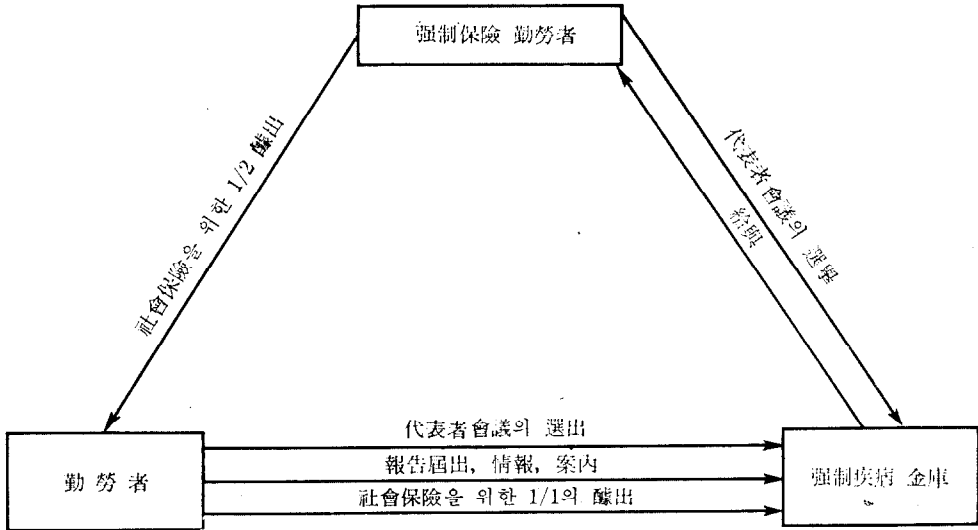
年金者나 失職者는 대개 疾病保險金庫의 強制加入者로 되나 결국은 勤勞者로서 加入되었던 保險의 加入者로서 계속된다.

第 5 節 構成員의 釐出義務——保險金庫에의 申告

I. 構成員으로서 釐出金의 義務가 免除되는 時期

社會疾病保險의 保險關係가 成立함으로써 構成員의 資格이 생긴다. 이리하여 構成員關係에 있으면 原則적으로 定規的인 保險金釐出義務를 지게 되어 있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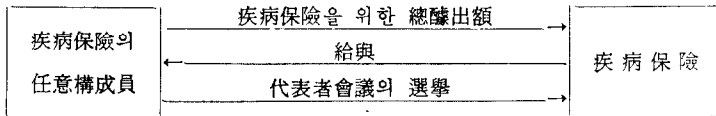
社會疾病保險에 있어서의 構成員은 例外的으로 釐出金을 免除받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것은 被保險者가 위에서 말한 疾病給與金, 母性給與金 혹은 傷害保險(第 3 章 3 節) 上의 傷害給與金, 더 나아가서 3 週까지의 無給休暇를 받는 경우등이다(帝國保險令 第311條, 383條). (13)



또한 國土防衛服務期間동안 構成員資格은 그대로 계속된다(帝國保險令 第209條 a).

補充金庫의 強制構成員(加入者)에 있어서 釐出金償還(Beitragsabführung)은 部分的으로 앞에서 作成한 圖式과는 다르게 다루어진다(帝國保險令 511條 以下).

任意加入者의 保險關係



II. 使用者와 勤勞者의 届出——通知義務

使用者가 하나의 勤勞者를 採用하든가 혹은 어떤 勤勞者를 그의 企業에서 내보냈을 때에는 그 事實이 있는 날로부터 3日以內에 保險金庫에 報告하여야 한다. 또한 就業關係의 變更, 예를 들면 俸給等級의 變更 또는 國土防衛의 開始期間과 終了期間등도 또한 같다.

(12) 西獨에서는 年金 및 失業保險은 構成員(Mitglied)이라 부르지 않고 단순히 保障(Versicherung) 이라고만 부른다.

(13) 또한 被保險者가 過渡給與金(Übergangsgeld) (第 4 章 3 節)을 받는 경우에도 釐出金의 支給이 면제되는 바, 이 過渡給與金은 疾病給與 대신에 지급된다(帝國保險令 183條의 6).

補充金庫에 대한 報告屆出義務는 被保險者 自身이 진다.

使用者와 勤勞者는 疾病保險金庫가 保險業務와 釀出金의 確定 및 保險金支給承認을 하는 데 必要한 事項을 疾病保險當局에 申告할 義務가 있다.

第 6 節 保險金庫財源의 充當——釀出負擔의 割當

疾病保險金의 財源은 釀出金으로서 充當된다. 聯邦은 現行母性保護給與金(第 3 節 6)의 一部分을 支出한다.

釀出金의 負擔基準은

(1) 勤勞者를 위한 義務釀出金은 使用者와 勤勞者가 半半씩 負擔한다. 이 釀出金의 策定은 이것이 釀出金의 測定限界를 넘지 않는 限 勞動賃金의 100分率에 따라 決定한다.

(2) 被保險者에 의한 任意釀出額; 使用主는 事務職員에게 法律上의 釀出額의 半에 相當한 一種의 追加金(Zuschuß)을 支給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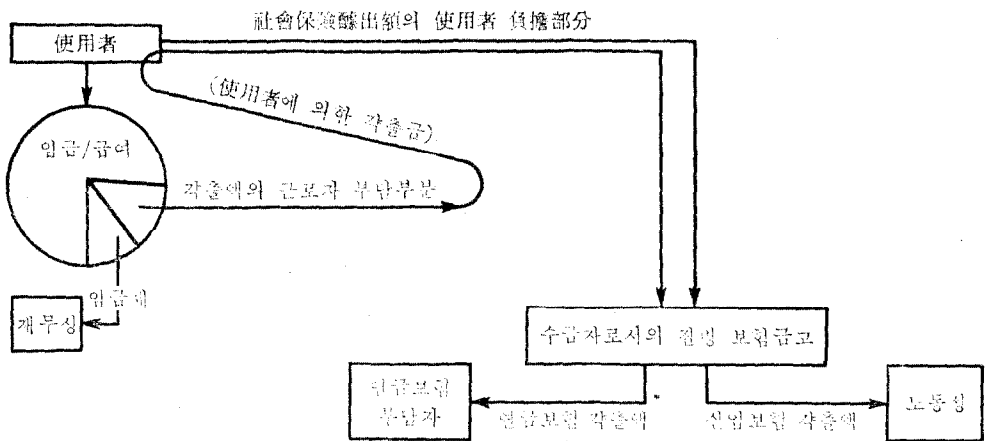
(3) 年金釀出額은 年金保險負擔者가 負擔한다.

(4) 軍服務者의 保險釀出金은 聯邦이 負擔한다.

(5) 失業者扶助金과 扶養扶助金 受領者의 釀出金은 聯邦勞動省이 負擔한다(7章 7節).

疾病保險을 위한 勤勞者의 義務釀出金은 年金 혹은 失業保險을 目的으로 한 釀出額과 함께 全體社會保險釀出金으로서 使用者로부터 管轄疾病金庫에 納付한다. 이러한 種類의 釀出收金은 賃金控除制度(Lohnabzugsverfahren)이라 부른다. 이에 대하여는 第 4 章 第 4 節을 參照할 것.

通常의인 社會保險釀出方法



疾病保險金庫는 또한 保險金徵收機關으로서 年金 및 失業保險의 保險義務金에 대한 決定을 한다. 補充金庫에 대하여는 部分的으로 特別規定이 適用된다.

第 7 節 醫師, 齒科醫, 病院 및 藥劑師間의 共同協力

醫師, 齒科醫 및 病院은 被保險者와 그의 家族(保險金庫上의 看護對象)의 醫療上의 看護를 確保하기 위하여 相互 共同協力한다. 각 醫師, 例를 들면 齒科醫는 要請에 따라 保險醫療上의 看護에 任命된다(帝國保險令 第368a). 이런 경우 被保險者는 指定받은 醫師나 齒科醫師中에서 自由로 選定할 수 있다.

醫師와 齒科醫師의 報酬는 醫療保險醫師協會와 疾病保險金庫사이 에 맺은 契約에 따라 處理된다.

또한 疾病保險金庫는 病院과 藥劑師와도 契約를 締結한다.

第 8 節 保險案內

保險官廳과 疾病保險金庫는 國家行政機關이나 地方行政機關을 通하여 疾病保險을 案內한다.

1. 疾病保險金庫의 委託業務

疾病保險金庫는 또한 年金 및 事故保險, 聯邦政府의 戰爭犧牲者保護의 給付事務를 맡아 본다.

第 3 章 社會災害保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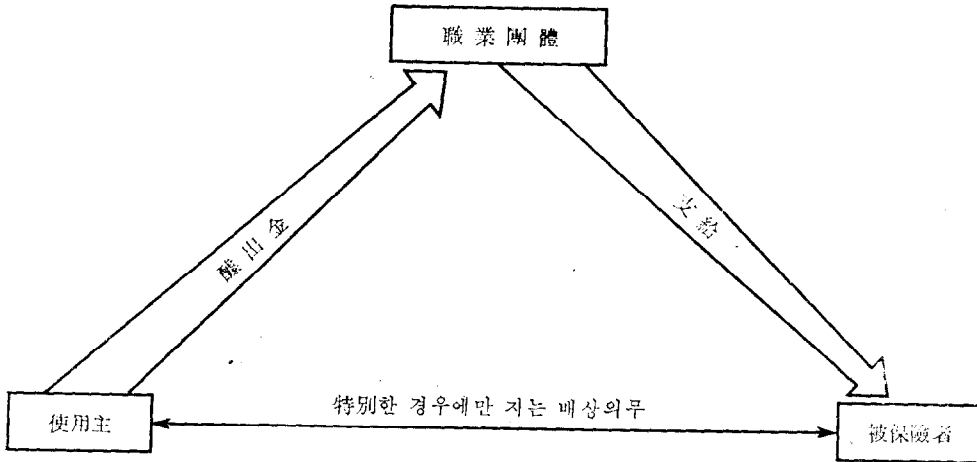
第 1 節 序 論

社會災害保險은 모든 適切한 手段으로 勞動災害를 防止하기 위한 任務를 갖는다. 또 産業災害防止 措置에도 不拘하고 勞動災害가 發生하는 경우 災害保險金庫는 被災者와 그의 家族에게 被害者의 所得能力의 回復, 勞動 및 職業促進(職業扶助) 그리고 被災者와 그의 家族의 扶養費를 支給함으로써 補償을 行하게 된다. 事故로 因한 被災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의 遺族은 死亡扶助金(葬儀費)와 現行年金を 받게 된다. 이러한 모든 支給에는 請求權이 前提된다.

災害保險의 法律規定의 本質의 內容은 帝國保險法의 第 3 卷(第537條~第1147條)에 들어 있다.

被保險者인 勤勞者와 그의 遺族은 勞動災害가 發生하였을 경우 勞動災害保險當局(Träger)에 대하여 公法上의 補償請求權을 갖는다. 그리고 이 請求權은 勤勞者의 歸責事由와 關係없이 主張할 수 있다. 이 勞動災害保險의 釀出金은 使用者만이 負擔하며 勤勞者는 釀出金を 납부하지 않는다.

勞動災害保險金庫는 營業上의 企業團體(예를 들면 鐵山職業團體), 聯邦, 州 및 公共團體의 勞動災害保險金庫, 農林業에 종사하는 職業團體 그리고 海運에 從事하는 職業團體들이 맡아 본다.



第 2 節 災害被保險者의 人的範圍(帝國保險令 第539條)

I. 産災保險加入資格者

勞動災害保險에 있어서는 帝國保險令 第539條, 第540條에 따라 다음과 같은 者가 保險加入이 許容된다.

(1) 敎習生과 家內勞動者를 포함한 모든 勤勞者, 나아가서는 海外就業者도 이에 포함된다(第 2 章 第 2 節 2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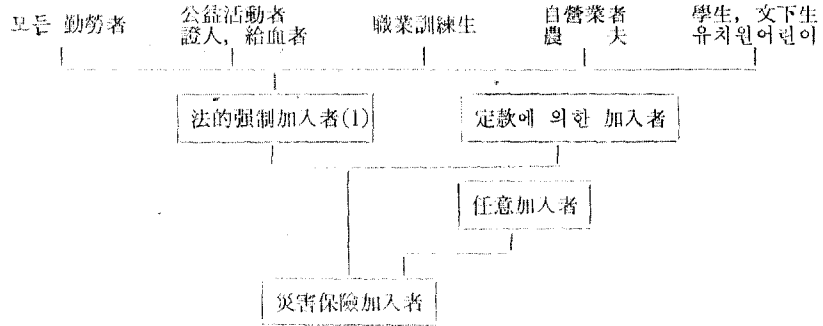
公務員(官吏)과 準公務員도 加入할 수 있다.

(2) 當局의 勸誘에 依하여 失業된 者.

(3) 特定한 企業主, 例를 들면 農夫와 그의 配偶者(女).

(4) 公共利益을 위하여 活動하는 者로서 여기에는 保健機構·獸醫機關·社會事業에 從事하는 者, 산과명원, 自由醫, 齒科醫, 藥劑師에 從事하는 者등도 自由로 加入할 수 있다.

이외에 災難救助에 從事하는 者, 他人의 身體 또는 保健이 위기에 처한 것을 救助하는 것을 專門으로 하는 者등,



航空事故救濟從事者등, 이외에 公共名譽職에 從事하는 者, 예를 들면 法院陪席者, 公共體의 公行政의 名譽會員 및 保險會社의 擔當者, 法院이나 官廳의 자문의인등도 포함된다.

(5) 職業訓練에 臨하는 者, 專門徒弟, 學校스포츠敎師, 職業訓練所生등

(6) 公共促進 혹은 租稅惠澤을 받은 公共住宅事業에 關與하는 者,

(7) 기호에 따라 他人의 作業場에서 일하는 者

(8) 準勤勞者로서의 既決因

(9) 이외의 各級學校學生

II. 其他의 企業主 및 既婚婦

勞動災害保險會社의 定款은 더 나아가 企業主와 그의 企業에서 活動하는 既婚婦에 까지 勞動災害保險을 擴大할 수 있고 또 企業探訪者 및 自治行政機關의 調査者등도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고 規定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모든 餘의 企業主와 그와 함께 일하는 配偶者도 이 保險에 任意로 加入할 수 있다.

第 3 節 社會勞動災害保險의 給與

1. 勞動災害의 效果的인 豫防(帝國保險令 第546條, 第708條~第722條).

勞動災害保險의 主體는 모든 可能的 措置로 通勤上의 交通事故나 職業上의 疾病을 포함한 勞動災害를 豫防하지 않으면 안되며 우선 效果的인 應急措置(團體金庫를 設置하여)를 하여야 한다(帝國保險令 第546條).

職業團體는 勞動災害에 대한 規約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各個別 營業分野에 있어서 勞動災害의 豫防을 위하여 各企業主는 어떠한 措置를 取하여야 할 것인가를 定하고 있고 또 한편 근로자는 그의 勞動에 臨하여 機械등에 대하여 어떠한 注意를 해야 한다는 것을 定하고 있다. 勞動災害保險主體는 만일 이 企業主나 勤勞者들이 이 規定들을 遵守하지 아니할 때에 罪金刑을 科한다. 이 規定들의 遵守與否는 技術勤勞監督官이 監督한다. 勞動災害危險에 대한 戒몽은 例를 들면 필름, 브라카드, 講演, 敎科課程등을 通하여 꾸준히 行하여 진다.

20名以上の 從業員을 거느리는 모든 企業에 있어서는 安全責任者(Sicherheitsbeauftragte)를 두게 되어 있는 바, 그들은 現代的인 勞動災害豫防措置에 精通하여 있고 勞動災害豫防에 있어서 使用主를 補助하여야 한다.

II. 被災害勞動者 혹은 그의 遺族給與(帝國保險令 第547條).

1. 勞動災害給付의 種類

勞動災害保險은 勞動災害가 發生했을 때 災害補償으로서 集中的인 治療, 勞動 및 職業促進, 傷害 結果의 輕減措置, 年金 그리고 勞動災害로 死亡한 경우 遺族年金등을 배분다.

勞動災害에 대한 傷害給與

勞動不能期間은	⋮	잠정적인	⋮	늦어도 2年後에는
傷害扶助金支給	⋮	傷害年金	⋮	長期年金支給
				→

治療行爲나 職業扶助는 期間上 無制限임

2. 勞動災害의 概念

勞動災害의 給與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支給된다.

- (1) 災害를 防止하려고 事故를 불러인인 行爲는 保護를 받는다.
- (2) 勞動災害는 法律上의 意味에서 把握된다.

四獨은 被保險勞動活動(職場內, 勤務旅行等)의 경우 勞動災害를 넓은 意味의 勞動災害로 把握하는 바, 通勤途上의 災害(帝國保險令 550條)와 職場疾病(帝國保險令 第550條)이 이에 屬한다.

勞動災害法上의 事故는 그것이 하나의 身體傷害 혹은 身體附屬部分(身體人工補裝)을 傷害했거나 혹은 被保險勞動活動이 勞動災害의 原因이 되든가 혹은 重要的 部分의 原因이 될 때의 損害를 補償한다. 物的損害 例를 들면 衣服의 破損등은 補償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勞動災害補償保險當局은 勞動災害의 存否를, 職務上 使用主의 災害申告에 따른 申請에 關係없이 實査해야 한다. 그러나 被勞動災害者는 災害에 있어 事實關係의 解明에 協力할 義務를 지는 바, 例를 들면 그는 原則的으로 事件의 眞實을 진술한다든가 혹은 證據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이것이다.

만인 勞動災害가 禁止法規에 違反하여 생겼다든가 아니면 태만한 行爲에 의하여 생겼다고 하더라도 補償義務가 있다. 例를 들면 달리는 車에 뛰어오른다든가 내거리에서 步行燈에 위반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등에도 補償義務는 있다.

判例에 따르면 例를 들어 職務上旅行, 企業의 祝祭日, 特定한 職業上 必要한 擲體體操나 競技, 鑛山業에 있어서 竣工式 및 企業의 業務와 關聯하여 行하는 教育課程에 參與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災害를 勞動災害로 보고 있다.

具體的인 例를 들면 企業의 祝祭日에 부기이사무원 Berta Brauer가 모든 종업원이 참가하는 Preiskegeln이란 놀이 경기에서 넘어지 부상을 입은 때, 이 事故를 企業의 祝祭와 關聯된 負傷으로 보고 勞動災害(verkehrsublich sein)로 判定했다.

企業의 業務上 被保險者의 勤務를 위한 場所에 가기 위하여 長距離旅行을 하는 도중의 事故도 通勤災害로 본다.

通勤災害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거나 또는 指定된 交通手段 다시말하면 通勤하는데 一般的으로 利用되는 길로 通勤하는 途中的 災害만을 通勤災害로 본다. 다만 보통 사소한 迂回路上을 따라 通勤한 경우의 交通災害도 해석상 通勤災害로 取扱받는다. 그러나 상당히 먼 迂回路나 혹은 私的인 用務로 위에서 定義한 通勤路를 벗어난 경우의 交通災害는 그것이 비록 出退勤上 입은 交通災害라 하더라도 通勤災害로 取扱되지 않는다.

唯獨 被保險者가 飲酒한 結果로 일어난 通勤上의 災害는 原則上 保護되지 않는다. 기타 다른 原因(길이 미끄럽다든가 부레키가 들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은 本質的으로 通勤災害의 成立의 理由가 되며 이럴 경우는 비록 음주한 경우라 할지라도 保護받게 된다.

職業病은 職業上의 勞動으로 發生한 疾病으로 간주되며 職業病에 關한 法令(BKVO—Berufskrankheitenverordnung)에 따라 處理된다.

이 職業病에는 例를 들면 難聽病, 耳聾, 職場에서 생긴 肺病, 기타 化學用品으로 생긴 職業病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職業病은 대개 一定한 職業團體에 局限된다.

事業主는 勞動災害가 發生한 事實을 안후로부터 3日이내에 그 勞動災害를 勞動災害保險當局에 申告하여야 한다. 勞動災害로 인한 死亡은 지체없이 勞動災害保險當局과 警察에 報告해야 한다.

3. 治療行爲의 종류, 損害給與金의 수령주체(帝國保險令 第557條~第566條).

治療行爲는 醫師의 治療行爲외에 藥劑, 治療 및 身體補助品, 其他의 措置와 기타 看護員이 없을 때에는 看護給與金등이 있다.

社會的 勞動災害保險에 따라 부여되는 治療行爲는 可能한 限, 事故후 일찍 始作하여야 하고 모든 가능한 方法으로 事故의 結果를 迅速하고, 效果의어니 가능한대로 輕便히 除去하여야 한다. 治療行爲, 損害給與金 및 職業給與金등은 모두 습하여 復舊措置(Rehabilitationsmaßnahmen)라고 부른다.

만일 한 負傷者가 勞動不能力이 된다면 企業, 病院 및 醫師들은 通常의으로 勞動災害에 익숙한 專門醫師(Durchgangsarzt)나 혹은 勞動災害保險에 指定된 專門醫를 지체없이 負傷者에게 보내야 할 義務가 있다. 被保險者가 重傷을 입었을 때, 그는 지체없이 事故取扱을 위하여 指定된 病院에 移送되어야 한다. 輕傷者는 대개 被保險者의 家族醫가 治療한다.

勞動災害에 의하여 惹起된 勞動不能이 계속되는 동안 勞動賃金이 이 이상 더 支給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傷病給與金(傷病給與金)이 支給된다. 傷病給與金은 疾病給與金과 마찬가지로 計算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純勞賃은 每月 3,000DM까지 考慮되지만 傷病給與金은 通常 疾病給與金보다 높다. 傷病給與金은 보통 過渡的 給與金(Übergangsgeld)으로서 간주된다.

4. 職業扶助金은 迅速한 勞動의 採用을 促進하는 制度이다(帝國保險令 第567條).

勞動災害保險이 行하는 大規模의인 職業扶助金은 대개 從來의 職場에 될 수 있는대로 速히 복귀하거나 再就業을 可能케 하도록 勞動能力을 回復시켜주는 데 있다. 만일 被災勞動者가 이 職業을 다시 遂行할 수 없게된 경우라면 그는 새로운 기대할 수 있는 職業에 대한 訓練을 받게 된다. 重傷者나 重傷을 입어 달리 職場을 紹介받기 어려운 被災勞動者는 勞災重傷者保護法에 따라 特別한 保護를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이 準重傷者들은 勞動의 轉旋에 特惠를 받으며 勞動當局의 許諾없이는 함부로 解雇하지 못한다.

5. 傷病者年金은 長期的인 傷病의 損害를 補償한다.

傷病者年金은 勞動能力의 喪失後에 始作된다. 全額年金은 全的인 所得不能의 경우에 支給된다. 여기서 는 100%의 勞動能力減少를 그 對象으로 한다. 年金은 勞動災害이전의 年所得의 3분의 2의 相當額이 된다(帝國保險令 第580~588條).

傷害의 輕重은 所得能力의 減少程度(MdE)에 따라 表示한다. 例를 들면 MdE는 정강이 部分에 있어서 다리의 切斷은 40~50%, 한쪽눈을 잃은 때에는 25~30%, 장님이 된 경우에는 100%의 年金이 支給되며 20%以下의 年金等級에 들어가면 보통 年金의 支給對象이 되지 않는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잠정적인 年金이 支給되며 이것은 늦어도 事故후 2年이내로 되어 있고 그후에도 계속 障害가 있으면 長期年金으로 바꾸는 例가 있다. 계속적으로 30%의 所得減少를 초대한 어떤 傷病者가 만일 社宅所有權을 願한다면, 그런 경우 10年동안의 年金協定으로 하여 추천한다.

6. 勞動災害로 인한 死亡의 경우, 遺族들은 어떠한 給與를 받는가의 문제

하나의 勞動災害가 被保險者의 死亡에 대한 原因 또는 共同原因인 경우에 勞動災害保險當局은 遺族에게 死亡給與金(葬儀金), 遺族年金 그리고 寡婦에 대한 一時給與金(Überbrückungshilfe)을 支給한다(帝國保險令 第589條~602條).

遺族年金으로서 는 다음과 같은 것이 問題된다.

(1) 寡婦年金(홀아비는 드문 例)은 被保險者의 最近의 年總所得額의 年額의 $\frac{2}{5}$ 내지 $\frac{3}{10}$ 이다.

(2) 홀로된 配偶者에 대한 特別年金이 있다.

(3) 死亡者의 아이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滿 18歲 내지 25歲가 된 때까지 孤兒年金을 支給하게 되어 있는 바, 이 年金은 完全孤兒인 경우 死亡者의 最近 年勞動所得의 $\frac{3}{10}$ 이며 半孤兒인 경우 $\frac{1}{5}$ 이다.

(4) 特別한 경우에 있어서는 尊親年金(Elternrente)이 있다. 이 年金들은 위에서 提示한 最高限度額을 초과할 수 없다.

第 4 節 企業主의 構成員資格——財源의 充當

職業團體(使用者團體)의 構成員은 使用者들이다. 그들은 釀出金에 의하여 財源을 充當한다. 企業에 있어서 勞動災害의 數와 輕重은 諸釀出額의 額數에 영향을 미친다.

第 5 節 使用者와 勤勞者는 有實行爲에 의한 勞動災害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않는다.

萬一 한 使用者나 한 勤勞者가 과실로 한 企業內에서 同僚勤勞者의 勞動災害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에 대하여 原則的으로 責任을 지지 않는다(帝國保險令 第636條~637條). 이런 경우 負傷者는 損害賠償請求權 대신 第3節에서 말한 바와같이 社會的災害保險當局에나 補償請求를 한다. 重大한 故意나 過失의 경우 補償責任은 社會保障制度의 그것에 反하여 처리한다. 즉 反社會的인 秩序罰은 여기서 問題한 바 아니다.

第 4 章 勞 動 者 및 職 員의 社 會 年 金 保 險

第 1 節 序 說

I. 年金保險의 意義와 性格

保健措置나 其他療養措置를 통하여 年金保險을 被保險者가 될 수 있는대로 오랫동안 健康하고 所得活動을 할 수 있도록 最善을 나한다.

老齡年金의 支給은 被保險者와 그의 家族이 老後에 큰 財政的인 근심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制度이다. 勤勞者들은 그들이 所得不能때문에 退職年齡전에 所得活動에서 完全히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혹은 勤務不能때문에 그의 職場에서 僅少한 所得밖에 받지 못하는 때의 경우등에도 또한 適切한 年金이 주어진다. 被保險者가 死亡한 경우에도 遺族들은 一般的으로 풍족한 年金을 支給받는다. 資格要件이 充足되는 限 이러한 年金者들에게도 法的請求權이 成立한다.

마라시 生命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危險도 社會年金制度에 의하여 效果的으로 카비된다.

1957年의 年金制度의 改革이래, 勤勞者의 衛生保健措置가 가장 두드러진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諸年金額은 점차 다이내믹한 局面을 보여주고 있는 바, 即 年金은 勤勞者의 賃金 및 給料와 거의 同等한 程度로 急上昇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 年金制度를 통하여 年金加入者들은 漸高하는 國家의 富와 福祉에 參與하도록 되지 않으면 안된다.

年金受領額의 程度는 諸方面의 釀出額의 數의 量에 따라 方向지워진 뿐 아니라 例를 들면 兒童福祉追加金を 통하여 또한 社會的觀點(sozialen Gesichtspunkten)에 따라 方向지워진다. 年金加入者와 그들의 家族은 個人的인 困窮狀態에 臨하여 또는 社會的困窮期(sozialen Abstieg)에 保護되어야 한다.

法律上的 年金保險은 모든 保險加入義務者에 대하여 強制性을 띤 하나의 公法上的 社會保險이다.

義務保險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保險關係는 그대로 存續하며 그 以上の 釀出納附임이도 그후의 保險金給與에 대한 法的 請求權이 存續한다. 대개 하나의 任意的인 再保險이 許容되는 경우가 많다.

年金保險의 給與를 위하여 要求되는 莫大한 資源은 80%가 被保險者의 釀出金으로서 充當되며 나머지 20%가 國家에 의한 追加的인 公的扶助에 의하여 充當된다.

현재 西獨에 있어서는 伸縮性있는 尊親年金, 一定한 金利生活年金額(Kleinrenten)의 引上, 母性을 위한 유아양육비의 支給 및 自營業者나 家庭婦를 위한 年金保險制度의 開設등이 計劃되고 있다.

被保險者나 使用主를 위한 主要인 個別的인 問題는 公告板(Merkblättern)을 通하여 回信한다. 이것은 保險官吏나 保險主體의 當該 擔當者가 맡는다.

II. 構成과 保險主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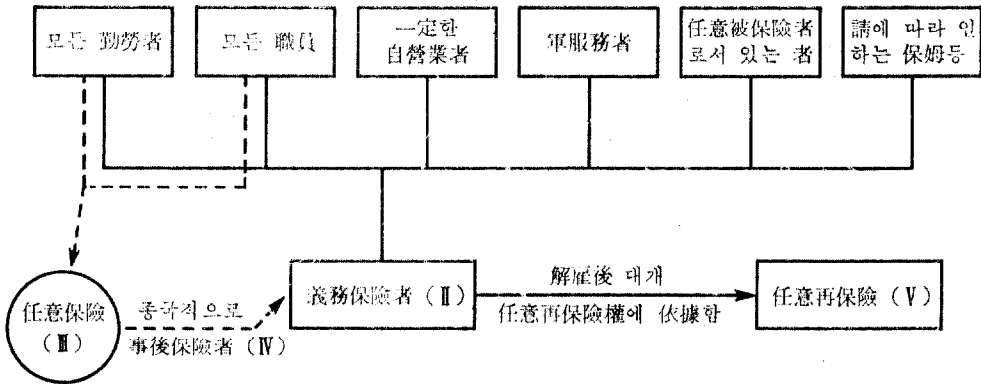
保險分野	保險主體
勤勞者의 年金保險	18個의 州保險廳이 있고, 나아가 特別保險廳으로서 함부르크에 海員 및 聯邦鐵道를 위한 海員金庫 및 聯邦鐵道保險廳이 있다.
手工業者保險도 포함	州保險廳이 있다(第5章 參照할 것).
職員年金保險	Berlin 31, Ruhestraße 2에 職員을 위한 聯邦保險廳이 있다. 이 廳의 任務는 船舶上에서 勤務하는 諸職員을 위한 海員金庫의 主管下에 있다.
鑛山年金保險	Bochum, Pieperstr. 14/28에 聯邦鑛山保險廳이 있다(第6章 參照).

III. 年金保險諸法規定의 法源

勞働者年金保險을 위한 依據法은 帝國保險法 第4卷이며 職員保險에 대한 依據法은 職員保險法(AV C)이다. 勤勞者年金保險에 대한 諸規定은 一般的으로 用語上 職員保險에 대한 諸規定과 一致하고 있다. 따라서 兩 保險分野는 함께 다루어진다.

第2節 年金保險의 人的適用範圍

I. 年金保險과 他被保險 人的集團과의 區別



II. 法에 따른 年金保險加入義務者

모든 勤勞者는 年金保險에 加入할 義務가 있다. 나아가 防衛義務者와 任意社會保險加入者의 경우도 年金保險에는 加入할 義務가 있다.

一定한 自營業者도 年金保險加入義務가 있는 바 例를 들면 教師(教授), 音樂家, 助産員, 病院看護員, 保姆, 育母 및 藝術家등이 이에 屬한다. 第2章 第2節 2에서 言及한 原則的인 說明이 이기에도 適用된다.

III. 年金保險加入義務免除者(帝國保險令 第1228條~第1231條: 職員保險法 第4條~8條)

1. 法律上 永久年金保險加入 義務免除者

특히 法律上의 規定에 따라 保險義務로부터 免除되는 者는 다음과 같다.

- (1) 疾病保險에 있어서와 같은 範圍內에서 副業從事者 및 副業活動者
- (2) 賃金を 받지 않고 大學 또는 專門學校의 研究機關에 종사하는 修習學生(Werkestudenten)
- (3) 官吏, 法官, 聖職者, 職業軍人, 準職業軍人等

(4) 老年年金의 受領者

職業從事不能年金이나 營利活動不能年金受領者가 그의 能力에 대응한 就業을 하고 있을 경우, 遺族年金受領者가 一定한 職業에 從事한 경우에는 年金保險에 加入할 義務가 있다.

2. 自請에 의하여 年金保險加入義務가 免除되는 者

이런 경우 年金保險加入義務가 免除되는 경우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一生동안 生活扶助金을 받는 者는 申請에 따라 保險加入義務가 免除된다(소위 Pensionäre). 이런 者는 나중에 다시 申請에 따라 保險義務를 질 수도 있다.

(2) 過去에(1952, 1957, 1965, 1968) 申請에 의하여 장애에 向하여 保險義務가 免除된 職員들.

IV. 官吏와 職業軍人의 事後加入時期(帝國保險令 第1232條, 職員保險法 第9條).

官吏, 職業軍人과 準官吏는 그들이 그들 職場에서 生計請求權이나 어떤 協定없이 離職한 때에는 그들이 保險免除되어 從事한 期間동안에 대한 追後保險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가 그 職에서 依願免除하였든 혹은 다른 어떤 理由에서 離職되었는지의 與否는 묻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使用主가 그의 總齣出額을 負擔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使用主는 이 齣出額을 支拂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

V. 任意齣出設定者(帝國保險令 第1233條, 職員保險法 第10條).

年金保險義務에서 벗어난 者는 어느 때이고 自意로 再保險을 들 수 있는 바 그 경우는 그가

(1) 法律上の 年金保險에서 保險加入義務가 없었을 때

(2) 과거 10년에 걸쳐 任意의 期間동안 60個月 年金保險에 義務齣出金을 納付하여온 때 등이다.

이것은 그가 아직 아무 老年年金給與金을 받지 않은 것을 前提로 한다. 10년이란 期間은 그 期間에 要求되는 補償期間, 損失期間까지 延張된다.

하나의 任意保險은 나아가 대개 1957年 1月 1日以前에 적어도 하나의 任意齣出金을 法律上 納付한 때에 可能하다.

疑心스러운 경우에는 保險當局은 被保險者의 請求에 따라 하나의 任意再保險이 許容되는지의 與否를 確認하여 준다. 齣出金의 數와 額數는 被保險者가 自由로 選擇할 수 있다. 任意再保險은 보통 혜불만 한데 그 이유는 被保險者는 通常 그 惠澤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종당에는 그의 遺族이 후일 그 齣出金에 相當하는 長期年金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再保險에 대하여는 案內處를 통한 相談을 받게 되어 있다.

例를 들면 : Claus Curtius氏가 職員으로서 1932年 3月 4日에 태어나 1950年 4月 1日부터 1953年 3月 31日까지 그리고 1958年 3月 30日부터 1962년까지 職員保險의 義務保險齣出金을 拂入했다고 한다면 그는 保險期間上으로는 1950年 4月 1日부터 1960年 3月 31日까지 10年동안이란 期間을 채운 것이 되고 61個月 義務保險齣出金을 納付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任意再保險을 들 수 있다.

VI. 追加의인 高額保險의 勸獎與否(帝國保險令 第1234條, 職員保險法 第11條).

義務齣出金과 任意齣出金의에 보다 높은 高額保險이 被保險者 또는 使用者에 의하여 設定될 수 있다. 齣出金等級의 選擇은 自由로 되어 있다. 金額은 흔히 푸레미엄이 붙는 지속계약이나, 右價證券, 生命保險등의 方法으로 하면 設定에 더욱 便利한고로 事前에 公共案內機關의 助言을 들어야 한다.

第3節 年金保險의 給與

I. 가장 重要한 給與要件.

給與는 하나의 保險關係가 成立하는 때, 더지 말하면 法律上 最小限 一回의 齣出을 納付한 때 이후에 支給된다.

一個 年金請求權에 있어서는 通常 最少 60내지 180個月의 保險期間(待期期間)을 必要로 한다. 勤勞者의 경우 舊復措置는 通常 60個月以下이면 補充해야 된다. 給與는 請求에 依하지 않으면 안된다.

II. 所得能力의 維持, 改善 및 回復措置(“Rehabilitations” 혹은 “Gesundheitsmaßnahmen”).

1. 年金保險에 의한 復舊措置

年金保險에 의한 復舊措置는 被保險者의 所得能力을 維持, 改善 혹은 다시 復舊시키야 義務를 지고 있다. 被保險者는 可能한 限 오랫동안 所得能力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復舊措置(治療行爲, 職業促進, 過渡期間扶助金등)는 職業 혹은 所得不能으로 인한 年金의 支給에 優先한다. 一般的인 病患(외병)의 경우에 있어서 治療行爲나 職業促進行爲는 能力給與로서 保險當局은 支給량에 따라 그것을 決定한다. 결핵병인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措置에 대한 法的請求權이 成立한다.

2. 결핵을 除外한 外병의 경우에는 被保險者나 年金者에 대한 保健措置가 있게 된다(帝國保險令 第1236條~第1244條, 職員保險法 第13條~第21條).

保險主體, 保險官廳의 경우 申請의 治療行爲와 職業配慮조치에 관한 承認條件은 다음과 같다.

- (1) 被保險者는 一定한 金額의 酬出을 納入한 후라야 한다. 通常 小額의 酬出金이면 된다.
- (2) 所得能力이 위험을 받든가 아니던 減少한다든가 그러면서도 治療行爲등 配慮措置가 可能이 있을 때
- (3) 被保險者가 그 措置를 同意한 때 등이다.

療養行爲는 모든 必要한 醫療上 및 非醫療上의 措置, 特히 療養所, 온천장 및 기타 特殊施設에 있어서의 取扱, 例를 들면 運動療法, 自然治療(日光), 임상수술, 호흡장치, 藥物치료, 運搬費 및 용돈등을 포함한다.

保險主體는 職業促進措置의 範圍內에서 勞動者의 再就業을 용이하고도 迅速하게 하며 이를 위하여 例를 들면 能力更生教育過程의 設置, 能力에 適合한 職場의 알선 및 職業再教育등을 支援한다.

事情이 許諾하는 限 被保險者는 그의 從來의 職業 혹은 類似職種에 就業시키게 되며 이로써 그가 從來에 習得한 知識, 숙련기술 및 經驗을 活用할 수 있게 한다.

再教育措置는 期待可能性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社會的 負擔만 轉해서는 안된다. 勞動官廳과 特別再教育機關은 定規의으로 이들을 參加시키야 한다.

治療行爲등 職業促進이 行하여지는 동안 賃金과 給料가 계속 支給되지 않는 限, 非年金者는 通常 從來의 純勞動賃金의 $33\frac{1}{3}\%$ 에서 80%에 相當하는 金額과 扶養家族의 數에 따른 過渡金에 대한 請求權을 갖는다. 過渡期給與金은 1973년이후 引上된 純賃金에 比例한 疾病給與金에 相當한 金額이어야 한다. 또 治療의 終了후 勞動禁止期間에 배屬어지는 保護扶助金의 支給과 義手足과 그의 類似한 補助品에 관한 追加的인 措置가 뒤따르고 있다.

3. 結核에 대한 措置(帝國保險令 第1244條a, 職員保險法 第21條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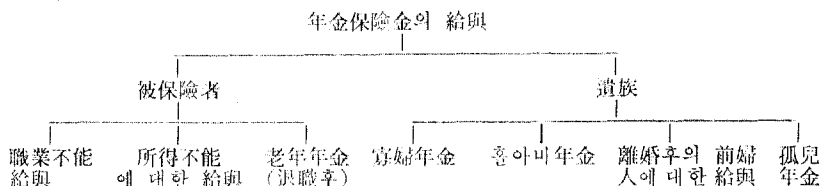
結核病이 있을 경우 治療措置 請求權은 被保險者와 年金加入者 뿐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生計를 維持하는 配偶者와 子息에 있어서도 成立한다. 治療行爲, 職業, 職業配慮 및 其他 社會的配慮措置는 以上의 人的範圍內라면, 急性 또는 重徵病에서 곧 治療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病勢의 展望에 관계없이 즉시 治療 또는 療養措置를 行한다. 이런 경우 被保險者는 保健衛生官廳이나 保險官廳에 治療 및 療養請求를 할 수 있다. 社會局은 흔히 追加的인 社會給與를 배屬어 病의 再發을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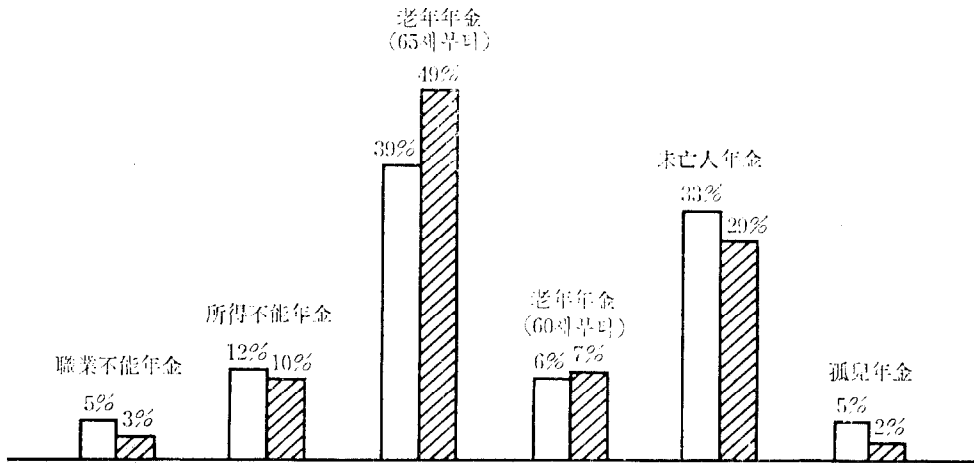
4. 追加措置

保險當局은 法律上으로 規定된 保險給與의에 例를 들면 代齒, 巨大한 治療補助品 기타 身體補足品등에 대한 追加費用을 負擔할 뿐 아니라 支給량에 따라 어린이의 治療費까지 負擔한다.

Ⅲ. 勤勞者와 職員의 年金保險의 給與

1. 給與의 種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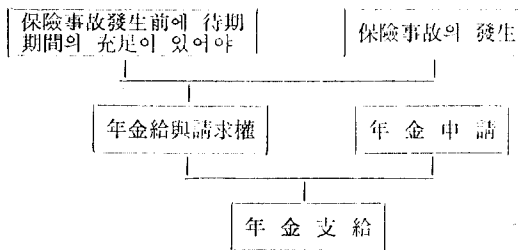
數에 따른 年金形態의 比率分配 □(1970), 總支出의 割當 ▨(1970)

2. 年金給與의 支給條件

年金保險當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年金을 支給한다.

- (1) 職業不能 혹은 所得不能, 老齡 혹은 死亡의 保險事故가 發生하였을 때
年金保險의 保險事故

- 職業不能
 - 所得不能
 - 老齡
 - 被保險者의 死亡
- (2) 60個月의 待期期間, 老齡의 경우는 180個月이란 期間이 充足된 때
 - (3) 老年年金은 65歲가 된 때, 寡아미 및 미망인年金은 그외의 條件이 充足된 때
 - (4) 年金支給은 年金支給申請에 依한다.



年金保險의 待期期間은 法律上 最低保險期間이다. 이 期間은 釀出金을 계속하여 納付하거나 補充하는 期間이기 때문에 이 待期期間의 充足과 함께 年金請求權이 成立한다. 이 最低保險期間은 나중의 年金支給請求權을 가지기 위하여 被保險者가 釀出額으로서 財務의 充當을 期하는 것으로 본다.

3. 職業不能에 대한 年金給與(帝國保險令 第1246條, 職員保險法 第23條).

1) 職業不能에 의한 年金受領者

職業不能年金을 받을 수 있는 者는 다음과 같다.

- (1) 26週間의 職業從事不能이 豫見되는 者.
- (2) 60個月의 待期期間동안 釀出金을 納付했거나 所定金額을 補充한 者. 特殊한 경우에는 이 때 1回의 釀出로서 職業年金을 給與받을 수 있다.
- (3) 年金支給은 請求에 依한다.

職業不能者(Berufsunfähig)라 함은 職場에서 一般的으로 期待되는 現在の⁽¹⁴⁾ 勤務活動으로 인하여

(14) 職場이 充分히 있어서 求職을 한 경우라면 失業보험에 들어간다.

생긴 疾病 혹은 其他 身體上의 허약으로 말미암아 다른 被保險者가 비슷한 教育, 同一한 知識 그리고 同一한 能力으로써 할 수 있는 能力의 折半밖에 發揮하지 못하는 者를 가리킨다.

여기서 活動의 期待可能性이란 被保險者가 그의 教育程度와 그의 從來의 職業活動을 遂行할 수 있는 活動의 可能性에 대한 期待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活動의 減少는 어디까지나 醫學的인 面에서 파악하는 것이지 社會的인 概念은 아니다.

따라서 所得不能 또는 職業不能의 與否를 가리내기 위하여서 保險當局은 醫師에게 鑑定을 依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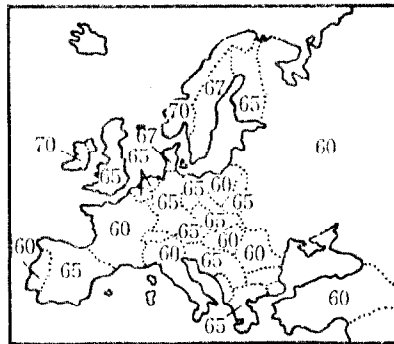
職業不能 혹은 所得不能으로 인한 年金이 拒否되는 경우에는 一年후에 年金申請을 다시 할 수 있으나 特殊한 경우에는 그 직후에 申請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

(1) 38歲의 技術製圖師 Dieter Drau가 1949年以來 계속하여 年金保險의 離出을 하고 1970年 6月 4日 交通事故로 오른쪽 팔꿈치를 상실했다. 그는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職業促進措置에 의하여 왼손으로 製圖하는 方法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7個月후에는 왼손 팔의 보조기를 使用했다. 이 事故로 그는 一年동안 그의 職務를 遂行할 수 없었고 이리하여 1971年 6月頃까지 職業不能者로 되었다. 年金保險上의 待期間은 充足되었던 것으로 1970年 12月 4日부터 1971年 6月 30日(27週以後)까지 職業不能年金을 支給받았다. 1970年 7月 16日이후 그는 疾病給與金을 받은 바, 이 疾病給與金은 1970年 12月 4日이후 職業不能年金으로 주어 들었다.

(2) 54歲의 官廳職員 Fritz Freitag氏는 36年이래 軍服務期間동안의 保險金離出을 중단하였다가 1972年 9月 18日 동맥경색에 걸려 約 1年동안(잠정적으로) 職業不能이 되었다. 그는 1973年 1月 20日 年金을 申請했다. 1973年 3月 18日부터 1973年 9月 30日까지의 期間동안 所得不能 때문에(잠정적으로) 年金이 支給되었다(Fritz Freitag氏는 7週이래 1972年 9月 18日후 1973年 3月 17日까지 疾病扶助金을 받았다).

유럽에 있어서 年金支給年齡(男子)



위 3의 2)의 說明은 所得不能의 경우에도 適用된다.

所得不能에 대한 年金은 職業不能年金으로 轉換할 수도 있고 職業不能年金이 所得不能年金으로 移轉할 수도 있다.

所得不能에 대한 年金은 職業不能에 대한 年金보다 約 50%가량 높다. 예나하면 所得不能은 勞動에 의하여만 所得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詳細한 說明에 대하여는 아래 7의 1)을 참조하기 바란다.

5. 65歲 혹은 60歲이후의 老齡年金(帝國保險令 第1248條, 職員保險法 第25條).

1) 모든 老齡年金은 年齡 65歲이후에만 받는가 ?

老齡年金은 滿 65歲가 되고 또 保險金離出期間 또는 補充期間을 充足한 者가 申請에 의하여 받게 된다.

申請에는 期間이 定하여져 있지 않다. 그러나 支給이 늦어지거나 時效期間 4년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申請을 適時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老齡年金은 通常 被保險者가 65歲가 되는 달이 經過한 이후부터 起算되며, 年金申請과는 아무 關係가 없다. 그러나 年金을 속히 支給받으려면 年金支給申請은 보통 3個月전에 提出해야 한다. 所得活動은 아무 制限없이 할 수 있으며 年金支給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失業者가 60歲이후에 老齡年金을 支給받는 時期

失業者는 一年동안의 失業期間이 經過한후에도 계속하여 失業狀態에 있을 때에는 그 失業期間에 대하여 申請에 따라 60歲이후라도 期間前의 老齡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바, 이런 경우 一年이란 失業期間은 全部 혹은 部分的으로 年齡 滿60歲이면 되며 180個月의 待期期間을 채워야 된다.

年金은 모든 保險條件이 充足되는 달의 經過와 함께 始作하며 또한 申請이 있어야 支給된다.

老齡年金은 就業에 從事하는 限——申告義務가 있음——制限되며 이러한 就業이 끝난 후 申請에 따라 비로소 支給된다. 그러나 사소하거나 短期的인 副業정도의 就業은 年金喪失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60才이후의 女性被保險者에 대한 特別規定

女性被保險者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期間前 老齡年金을 받는다.

(1) 年齡 60歲가 滿了하고 就業이나 其他 活動을 이 以上 더 계속 할 수 없을 때(保險事故로 됨).

(2) 年金保險의 待期期間을 履行한 때

(3) 年金支給申請이 있을 때

(4) 滿60歲이전 또는 就業이나 其他 活動의 상실전 最近 20年間(121個月間)義務釀出金を 納入한 때 老齡年金은 모든 條件이 갖추어진 달이 經過함으로써 비로소 支給開始된다.

老齡年金은 就業이 開始될 때에 상실된다. 이러한 就業이 끝난 후에는 申請에 따라 年金支給이 再開된다. 就業關係는 保險當局에 報告해야 한다. 保險加入이 強制되지 않는 副業은 年金取得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待期期間의 履行(最低保險期間)

1) 年金請求權에 대한 必要保險期間

60個月의 釀出 혹은 補充期間이란 短期待期期間(kurze Wartezeit)은 다음과 같은 年金支給의 前提條件이 된다.

(1) 職業不能을 위한 年金

(2) 所得不能을 위한 年金

(3) 遺族年金

이 短期待期期間은 最少限 일정한 釀出금이 拂入된 때에 特殊事情의 경우 充足된 것으로 본다(도표 참조).

180個月의 長期待期期間(lange Wartezeit)은 老齡年金請求權, 또한 60歲以後의 時期前 老齡年金의 取得에 대한 前提條件이 된다.

2) 保險期間의 待期期間(帝國保險令 第1249條, 職員保險法 第26條)

年金保險待期期間은 保險事故의 發生前에 履行한 釀出——또는 釀出補充期間間을 計算한다.

1924年 1月 1日 이후 保險事故때까지 지축한 釀出——또는 補充期間은 언제나 참작된다. 1924年이전에 지축한 釀出——또는 補充期間은 原則적으로 총 180個月의 釀出——또는 釀出補充期間이 履行되거나 혹은 1924年 1月 1日과 1948年 11月 30日사이의 期間에 最少限 一個의 釀出(橋梁의 釀出)이 있었을 때에만 算入될 수 있다.

例를 들면 :

Garda Gronau婦人은 1920年 1月 1日부터 1923年 12月 31日까지 48회의 義務釀出金を 納付하고 1940年에 4회의 義務釀出金, 다시 1969年 5月 1日부터 1970年 4月 30日까지 24회의 義務釀出金を 納付했다.

그러나 1924年 1月 1日 이전에 履行한 釀出金도 計算에 넣는 바, 그 理由는 橋梁의(釀出)期間(1924年 1月 1日 부터 1948年 11月 30日 까지, 다시 말하면 1940년에 釀出이 있었다는 意味)이 있었기 때문이다.

3) 釀出期間의 把握

釀出期間은 特히

(1) 西獨聯邦共和國, 西伯林 혹은 從來의 獨逸帝國(1945年以前)에 있어서의 義務釀出과 任意釀出을 總括한다(帝國保險令 第1250條, 職員保險法 第27條).

(2) 國外者年金法에 따라 추방지역 및 避難地域에 있는 추방자 및 피난민의 釀出期間 및 就業期間 또한 東獨(DDR)에 있어서의 釀出도 信憑할 수 있고 證明이 있으면 이 期間을 認定한다.

(3) 약간의 制限이 붙기는 하나 歐洲經濟共同體(EWG)와 덴마크, 大英帝國, 希臘,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및 터키 등의 他國에서 履行한 釀出期間도 이를 認定한다.

다만 部分的으로 釀出した 달은 原則적으로 한달로 처준다. 1957年 이전에 勞働者年金保險으로써 履行한 週別釀出은 月別로 還算하여 준다. 그 還算基準은 13週間 즉 3個月로 한다.

4) 補充期間의 意義(帝國保險令 第1251條, 職員保險法 第28條).

補充期間은 釀出履行을 하는 被保險者가 國家의 措置(軍服務)등 또는 政策의 關係(官吏의 期間)등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 一定한 無釀出期間을 말한다. 이 期間은 待期待期間의 補充을 위하여 마련된 期間이다. 그 기준은 履行한 期間에 따른다.

補充期間이 가장 짧은 경우는

(1) 第2次大戰의 末期까지 軍 및 徵用(文官포함) 服務期間 및 捕虜(포로)로 있던 期間 그리고 勞働不能 및 失業期間

(2) 1945年 1月 1日 부터 1946年 12月 31日 까지의 期間에 도망은 者 및 피난자 그리고 이 期間以外에 추방된 者, 도망자 및 集團移住者

補充期間은 以前에 算出 가능한 釀出을 했거나(Vorbeitrag) 아니면 補充期間의 終了後 이 終了期間에 잇다른 教育期間後 3年以內에 強制保險을 始作한 때(例: Nachbeitrag)에만 考慮될 수 있다.

예를 들면:

從前에 國家官吏였던 Heinz Hamburg는 1908年 8月 15日에 태어나 1924年 4月 1日 부터 1929年 까지 官吏保險에 대한 義務釀出金을 納付했다. 1944年 12月과 1945年 1月 그는 그의 故都 Schlesien에서 망명했다. 따라서 그는 補充期間으로서 1944年 12月 1日에서부터 1946年 12月 31日까지 25個月間을 計算하지 않으면 안된다(1945年 1月 1日에서부터 1946年 12月 31日 사이의 期間과 1944年 12月的 도명기간).

5) 特別한 境遇에는 短期待期間의 補充없이 年金を 支給할 수 있다(帝國保險令 第1252條, 職員保險法 第29條).

60個月의 짧은 待期待期間도 被保險者가 例를 들면 勞働災害때문에, 혹은 軍服務 때문에, 혹은 戰爭事故 때문에, 혹은 亡命때문에 職業不能, 혹은 所得不能이 된다든가, 혹은 死亡한때에는 그것이 補充된 것으로 보아준다.

이 境遇에는 그 請求權의 성립은 保險事故의 發生前에 및 回의 釀出로서 充分하다.

예를 들면:

지붕덮개 技術鍊工 Ingo Jürgens는 그의 教育期間을 시작한지 사흘만에 지붕에서 職業上의 作業을 하는 중 떨어져다. 물론 同業組合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勞働災害로 認定했다. 그런데 問題는 이 事故로 말미암아 그가 3年동안 職業不能이 되었다는 事實이다. 給與(年金)請求權이 成立되었는 바, 그 이유는 그가 勞働災害를 입어 그로 因하여 職業不能이 되기 전에 비록 몇주일동안 保險釀出金을 내기는 했으나 保險算定基準에 따라 한달로 計算되었기 때문이다.

7. 被保險者에 대한 年金支給

1) 年金額——年金形式(帝國保險令 第1254條, 第1255條, 職員保險法 第31條, 第32條)

年金額은

- (1) 釀出額에 따른다. 왜냐하면 年金額은 釀出額의 數와 程度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 賃金額에 基準을 둔다. 왜냐하면 年金은 年金取得時 모든 勤勞者의 平均勞動賃金의 水準을 考慮하기 때문이다.
- (3) 年金은 社會性에 依存한다. 그 理由는 年金이 특히 釀出金을 내지 않은 期間(補充期間, 탈락기간, 加算에 功勞를 참작하는 期間)도 計算에 넣는 경우가 있고 兒童追加金 및 遺族年金의 支給이 있기 때문이다.

職業不能으로 因한 年別年金은 每加算可能保險年度마다 人的 年金算定基礎의 1%를 負擔한다. 所得不能으로 因한 年給과 老齡年金은 每加算可能保險年度마다 人的測定基礎의 1.5%(상승율)를 負擔한다. 이 年金(給與)은 따라서 職業不能으로 因한 年金보다 50%가량 높다.

例를 들면 :

Konrad Krause氏는 40年保險이 立證됐다. 그의 人的 算定基礎는 帳簿에 10,000DM로 記帳되어 있었다. 職業不能의 경우 年金(給與)額은 10,000DM의 40×1%로 年 4,000DM가 된다. 所得不能 혹은 老齡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00DM의 40×1.5%=年 6,000DM=月 500DM가 된다.

人的 算定基礎는 一般의인 算定基礎⁽¹⁵⁾——每年 聯邦政府에 依하여 새로 決定된다——의 人的比率(P)이다. 例를 들어 被保險者가 平均價에서 50%를 더 벌어들인다면 그때에 그의 個人的比率(P)은 150%이다. 人的算定基礎가 그때에는 一般算定基礎의 150%이다.

이리하여 모든 被保險者年齡에 共通되는 年金公式은 다음과 같다.

年金(R)=人的比率(P)×一般的算定基礎(B)×保險年度(J)×上昇率(St.). 이것을 다시 쓰면

$$R = (P \times B) \times (J \times St.)$$

生産 P×B는 人的算定基礎이다.

一般的算定基礎는 現在 모든 勤勞者의 總平均賃金과 對應한다. 이것을 通하여 一般의 生活水準은 給與等級에 依하여 참작된다.

人的比率(%)인 (P)는 그의 全保險期間동안 個別被保險者의 總所得(예를 들면 釀出額)이 모든 被保險勤勞者의 平均所得으로 平均化되는 關係를 말한다.

例를 들면 :

Ludwig Lang의 賃금이 同一한 期間에 뒤 부록에 들어 있는 모든 被保險者의 平均總勞動賃金보다 平均 20%정도 더 높았다. 따라서 總勞動賃金은 그의 人的比率 (P) 120%, 다시 말하면 그의 人的算定基礎는 一般算定基礎보다 20%가량 높다. 1972년에 保險事故가 發生했다면 人的算定基礎는 12,008DM의 120%=14,409.60DM이다. (120% von 12,008DM=14,409.60DM).

2) 年金計算의 경우 保險期間의 算定(帝國保險令 第1258條, 職員保險法 第35條).

年金計算의 경우 保險期間으로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待期期間으로 計算되는 釀出期間 및 補充期間
- (2) 釀出期間으로 認定할 수 있는 탈락기간
- (3) 加算期間

以上은 다만 各各 그 條件이 갖추어진 경우라야 한다.

各月은 다만 一回 計算된다. 한달이 못되는 部分(근로자의 경우)은 한달로 計算한다. 12個月을 1保險年度로 본다. 7個月에서 11個月까지 나머지도 一年으로 計算한다. 6個月 未滿이면 半年으로 간주한다.

保險基礎가 소실 또는 빠져 있을 때에는 保險關係는 不完全하기 때문에 被保險者는 이제까지 認定받지 못한 保險期間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保險當局에 異議를 提起하여 整理해야 하며 使用主의 證明을

(15) 1971年 保險事故에 대한 一般的 算定基礎는 10,967DM, 1972年의 保險事故의 算定基礎는 12,008DM이다.

첨부하여 解明하여야 한다.

3) 脫落期間(帝國保險令 第1259條, 職員保險法 第36條).

脫落期間은 被保險者가 個人的根據에서, 例를 들면 勞動不能 혹은 教育的 延長 때문에 義務齎出金を 納入할 수 없었던 관계로 생긴 無齎出期間을 말한다. 이 期間은 다만 年金計算의 경우에만 計算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은 待期期間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 脫落期間(Ausfallzeit)은 證明을 要한다.

脫落期間은 特히 보험카드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證明되거나 아니면 確定된다.

(1) 保險義務가 있는 職場이나 營業活動이 勞動不能, 治療過程, 妊娠, 產褥, 氣候不順扶助金(Schlechtwettergeld)등의 取得 혹은 失業에 依하여 적어도 한달동안 중단된 期間

(2) 滿 16歲以後 받은 教育으로서 最長期間 4年까지의 專門教育 혹은 最高 5年까지의 專門大學教育에 參加하면서 保險義務職業에 從事하는 期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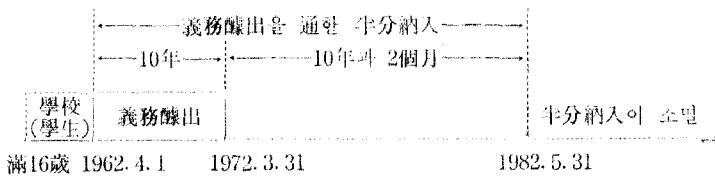
(3) 大部分의 경우 滿 55歲이전에 年金取得期間이 到來하여 이 期間이 다시 소멸하였다가 후에 年金を 받게 되는 경우(65歲), 그 以前의 脫落期間

脫落期間은 義務齎出을 通한 半分齎出이 있는 경우에만 計算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保險이 開始된 時期부터 保險事故가 發生할 때까지 적어도 義務齎出金の 半을 納入한 것을 말한다. 그 외에 總體的으로 最少限 60個月의 義務齎出이 現存한 것이 必要하다.

例를 들면 :

Marie Müller 婦人은 1944年 3月 1日에 出生하여 1962年 4月 1日부터 1972年 3月 31日까지 學校教育에 從事하여 義務保險金を 納付했다. 이기의 出生으로 그녀는 1972年 3月 31日에 積金を 그만두었다. 그녀는 1982年 5月 31日까지 職業 혹은 所得不能狀態에 있어야 한다면 義務齎出에 의한 半分納入(Halbdeckung durch Pflichtbeiträge)이 있게 될 것이다. 이로서 脫落期間의 起算請求權이 成立한다고 한다. 이 件의 延長된 1960年 3月에서 1962年 3月까지의 教育的 延長期間은 모두 31個月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保險事故가 發生하면, 例를 들어 1972年 7月 10日에 처음으로 發生하였다면, 義務齎出을 通한 半分納入이 탈락하고 脫落期間은 그 다음부터 참작할 수 없게 된다.



4) 加算期間 (帝國保險令 第1260條, 職員保險法 第37條).

滿 55歲이전에 職業 혹은 所得不能(혹은 死亡)이 된 被保險者는 加算期間을 計算하여 받는다. 加算期間은 保險事故의 發生日로부터 滿 55歲까지의 期間을 말한다. 이 期間은 被保險者가 保險事故의 發生前에 最後 60個月동안에 적어도 36個月을 齎出했거나 혹은 義務保險에 의한 半分納入을 한 事實이 證明될 때에만 참작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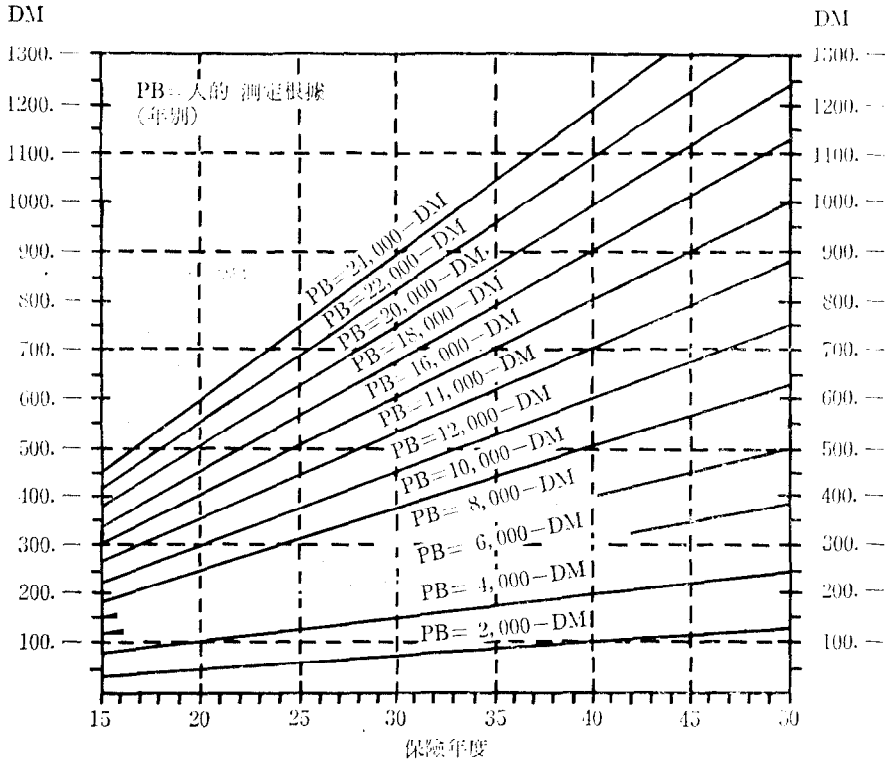
例를 들면 :

(1) 1950年 4月 4日에 태어난 精密機械工 Otto Oster氏는 1966年 4月 1日부터 義務保險金を 納入했다. 그는 1972년에 不意의 事故를 당하여 그후 約 2年동안 職業不能이 되었다. 給與支給의 경우 齎出期間은 保險期間으로서 참작된다(例를 들면 1966. 4. 1부터 1972. 3. 31까지). 그리고 加算期間은 保險事故의 發生日로부터(1972. 4. 1) 滿 55歲에 이를 때까지 總 39年 1個月이 된다.



(2) 脫落期間에 대한 例에 있어서는 만일 保險事故가 1982年 6月 1日에 發生했을 경우, 保險事故의 發生日로부터 滿 55歲에 이르기까지의 期間을 加算期間으로서 포함시킨다.

5) 被保險者에게 支給하는 月別 給與의 額數는 아래 圖表와 같다. 이 圖表는 所得不能이나 혹은 老齡으로 因하여 支給되는 月別額數이다(職業不能으로 因한 給與는 約 3分之1 가량 낮다).



6) 兒童追加金支給對象(帝國保險令 第1262條, 職員保險法 第39條).

被保險者에게 支給하는 年金은 被保險者의 子女數에 따라 兒童追加金이 붙는다.

婚姻中의 자식, 年金資格者의 家庭이 養入한 義子, 適出宣告를 받은 자식, 養子, 父母가 確認한 事實婚上의 자식, 被保險者가 데리고 키우는 婚姻外의 아이로서 扶養을 確認한 아이, 이외에 孫자, 조카로서 被保險者가 扶養義務를 지고 있는 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에게는 兒童追加金이 따르며 滿 18歲까지를 限度로 한다.

以外에도 最高 滿 25歲까지의 未婚 또는 既婚子息의 경우에도 그 要件은 다음과 같다.

- (1) 學生이거나 職業教育中에 있는 者.
- (2) 身體上 또는 精神上으로 不具여서 自給能力을 상실하고 있는 者.
- (3) 任意로 社會給與를 받도록 保險에 加入되어 있는 者.

兒童追加金은 一般의인 測定根據(基準)⁽¹⁶⁾의 年 10分之 1이 된다.

7) 追加保險의 增加額數가 支給된다(帝國保險令 第1261條, 職員保險法 第38條).

(16) 1972年 兒童追加金은 月 100.10DM이었다.

追加保險을 目的으로 한 追加釀出에 대하여는 增加額數가 支給된다. 그것은 不變追加年金額으로서 支給된다.

8. 遺族年金(帝國保險令 第1263條~第1271條, 職員保險法 第40條~48條).

1) 遺族年金の 支給

遺族年金은 被保險者의 死亡 혹은 失蹤의 경우에 申請에 따라 支給한다. 그 要件은 被保險者가 그의 死亡時까지 60個月이라고 하는 待期期間을 기쳤거나 혹은 그 待期期間을 履行한 것으로 認定받거나 被保險者가 그의 死亡時까지 保險年금이 成立하게 된 때이다.

2) 거의 모든 未亡人은 保險上의 一般的인 條件을 갖춘 때에는 被保險男便의 死亡후 未亡人年金を 支給받는다.

再婚의 경우 未亡人年金は 消滅된다. 즉 이때 未亡人은 年金 5배에 相當한 補償金을 받을 뿐이다.

3) 홀아비年金の 支給對象

홀아비年金은 그의 死亡한 婦人이 給與金이나 其他의 給與로서 그의 家族을 全的으로 扶養하여온 때에 支給된다. 다만 홀아비가 재혼한 때에는 補償金의 支給이 있을 뿐이다.

4) 從來의 配偶者에 대한 年金

離婚한 被保險者와의 結婚이 無效로 宣告되었다든가 혹은 取消된 때에 被保險者의 從來의 配偶者는 死亡者인 配偶者가 死亡時까지 扶養義務를 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申請에 따라 年金請求權을 갖는다.

5) 거의 모든 孤兒가 孤兒年金を 支給받는다.

被保險者의 死亡후 그의 子식들은 兒童追加金에 대한 規定에 따라 申請에 의하여 孤兒年金を 받는다.

6) 遺族年金の 支給開始

未亡人 및 홀아비年金 및 孤兒年金은 被保險者의 死亡 혹은 死亡한 달이 경과됨으로써 開始된다. 다만 申請이 있어야 支給된다.

7) 遺族年金の 額數

廣義의 未亡人年金(홀아비)은 未亡人이 45歲가 되든가 혹은 그녀가 職業不能 또는 所得不能이 되든가 아니면 대개 孤兒年金取得資格兒童을 養育하는 경우에 支給된다. 이 소위 廣義의 未亡人年金은 兒童追加金없이 被保險者의 所得不能年金の 10%의 6에 達한다.

그의 未亡人은 兒童追加金없이 그리고 加算期間에 대한 考慮없이 被保險者의 職業不能年金の 10%의 6에 相當하는 狹義의 未亡人年金を 받는다. 이 年金은 흔히 制度上 廣義의 未亡人年金보다 낮다.

未亡人은 最初의 3個月동안 未亡人年金대신에 兒童追加金이 없는 保險年金を 받는다.

孤兒年金은 兒童追加金없이 半孤兒인 경우, 被保險者의 所得不能年金の 10%의 1, 完全孤兒의 경우 被保險者의 所得不能의 5%의 1이 된다. 다시 말한다면 孤兒年金은 兒童追加金까지 引上된다.

遺族年金은 兒童追加金을 合하여 被保險者의 所得不能年金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9. 年金은 해마다 勞賃 또는 給料引上에 따라 調整된다.

年金은 物價보다도 더 크게 引上한다. 즉 年金은 해마다 平均賃金이나 俸給에 對應하여 上昇한다. 年金加入者도 經濟의 好況을 均霑해야 한다는 것이다. 1957년에 支給한 年金은 1970년까지 이르는 동안 228.45%가 上昇되었다.

1957年以後의 年金引上率

1957年의 年金	6.1%	5.9%	5.4%	5%	6.6%	8.2%	9.4%	8.3%	8%	8.1%	8.3%	6.35%	5.5%	6.3%
	1959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2

IV. 釀出額의 補充

釀出額은 2年동안 아무 強制保險이 發生하지 않고 또 任意再保險이 不可能한 때에는 補充된다. 從來 結婚이란 動機에서 行하여진 釀出補充制度는 오늘날 一定한 條件下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V. 遍歷保險(年金保險分枝의 變更)

遍歷保險의 規定은 人生을 살아가는 동안 多數의 保險分野(勤勞者年金保險, 職員保險, 鑛山年金保險 등)에 加入하여온 總齣出額을 한데 모아 處理하는 方式을 導入하고 있다. 이 規定에 의하여 이 被保險者들을 그들이 保險分野를 變更하여 온 것을 統合하여 取扱한다. 이런 경우 從來의 여러 齣出을 참작하여 하나의 年金으로 支給하며 더우기 最後의 齣出이 納入된 保險當局이 이를 취급한다.

第 4 節 年金保險의 財政

年金保險의 財源은 80%이상 이 使用者와 被保險者의 齣出에 依存하며 나머지 20%를 聯邦政府의 追加金으로써 充當한다.

義務保險⁽¹⁷⁾은 勤勞者와 使用者가 반반씩 負擔한다. 이 義務齣出額은 貨金控除制度에 따라 疾病金庫에 納入하게 된다. 이에 使用者는 保險카드上 齣出證明書로서 純所得을 提示하여야 한다. 1973年이내 保險番號를 부여하여 保險한 明細綴로 代替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第2章 6節을 參照할 것.

任意齣出金은 被保險者가 대개 齣出印紙를 保險카드에 첨부함으로써 納入한다. 이 印紙는 우편국에서 求得한다.

保險카드는 적어도 3年이내에 保險官廳이나 義務疾病金庫에 의하여 作成된 차감예정증명서의 發付와 조건으로 교환된다.

強制 또는 任意齣出은 그것이 有效年度가 끝난 후 2年이 지나서 納入되면 原則적으로 無效이다. 例를 들면 1971年에 1969年과 1970年의 齣出金을 納付할 수 있다. 強制保險의 齣出納付期間은 좀더 길다.

第 5 節 保險官廳과 保險機關은 保險業務를 案內한다.

모든 法律上의 疾病金庫 및 年金保險의 擔當者 및 保險官廳은 保險義務와 保險自由(Versicherungspflicht und-freiheit)의 問題에 관한 個別的인 案內를 行한다.

年金保險, 任意再保險의 給付나 追加保險에 관한 個別的인 案內도 行한다.

第 5 章 手工業者的 年金保險

手工業者——自營業者——의 年金保險은 勤勞者年金保險의 一部分이며 어떤 特別한 保險分野가 아니다.

自營手工業者는 18年동안 保險加入에의 強要를 받는다. 이렇게 하여 被保險者는 基本保障에 대한 請求權을 갖는다. 이 以後 手工業者는 그가 後에 自意로 年金保險에 再加入할 것인가 혹은 生命保險契約를 체결할 것인가 혹은 양쪽 機會를 모두 併行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方法으로 追加保險에 加入할 것인가를 決定한다.

手工業者保險法의 몇가지의 特別規定과 함께 勤勞者의 年金保險規定(帝國保險令 第4卷)이 實定法的 基礎로 되어 있다.

保險主體는 州保險當局이 된다.

給與는 약간 다른 點이 있으나 대체로 勤勞者의 年金保險規定에 따른다(第4章).

第 6 章 鑛夫保險

鑛夫保險은 鑛山會社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疾病 및 年金保險을 執行한다. 保險主體는 보쿰(Bochum)

(17) 義務保險의 齣出比率은 1970. 1. 1부터 총임금의 17%, 1973년부터 18%, 齣出測定限界는 1972年 月 2,100DM=年 25,000DM이다.

에 所在하고 있는 聯邦鑛山組合이며 鑛山疾病保險과 鑛山年金保險局으로 나누어져 있다. 法的根據는 帝國鑛山法이다.

高所得職員도 強制保險에 加入하도록 되어 있는 鑛山疾病保險은 그 給與에 있어서 기타 다른 疾病保險의 그것과는 약간 다를 뿐이다.

鑛山年金保險은 艱苦의 重勞動에 由來한 一般勤勞者나 職員의 年金保險보다 높은 額數가 支給된다. 艱苦연금은 時期尙早의 給與減少 혹은 賃金減少의 경우 特別給與로서 支給된다. 이외에 鑛夫保險給與는 一般勤勞者와 職員의 年金保險의 給與와는 廣汎하게 對立된다.

第 7 章 失業保險과 其他 聯邦勞動當局의 課業

第 1 節 序 論

I. 聯邦勞動當局의 課業

聯邦當局 그리고 그의 傘下에 있는 州勞動當局 및 諸勞動官廳의 課業은 職業相談, 勞務斡旋, 職業教育의 促進, 生計費支給, 勞動障礙者의 勞務 또는 職業促進, 職場의 維持 및 創造, 失業扶助金 및 失業保險金의 支給, 나아가서는 兒童扶助金庫로서의 兒童扶助金의 支給등이다.

勞動當局이 取하는 諸措置는 聯邦政府의 社會的, 經濟的 政策의 範圍內에서 完全雇傭을 維持하는 努力點을 두고 내려진다. 이 諸措置는 또 賃金活動者의 職業의 能力, 職業障礙者의 職業上의 編入, 老齡賃金勞動者의 能力을 促進하는 등의 任務를 가진다.

이에 대한 法的基礎는 1969. 5. 13의 勞動促進法(ABG)이다.

II. 失業保險의 性格

失業保險은 거의 모든 勤勞者를 포괄하는 하나의 公法上의 強制保險制度이다. 失業保險의 釀出收入에서는 失業給與金의 支出이외에 또 기타 聯邦行政官廳 課業遂行에 財政의 支出을 한다. 다만 失業給與의 一部分과 兒童扶助金은 聯邦政府가 租稅財源에서 支出한다(第 6 節 참조).

III. 失業者의 給與⁽¹⁸⁾

失業의 경우, 또한 그 失業者가 가까운 將來에 可能한 職場을 斡旋받을 수 없는 때에는 生計의 確保를 위하여 失業保險金 또는 失業給與金이 支給된다. 勤勞者는 期間上 制限이 있는 失業保險金에 대한 請求權을 가진다.

作業待期, 職業斡旋의 모듬에 있는 者, 職場에서 必要로 하는 失業者는 낮은 失業給與金을 받으며 失業保險金은 받을 수 없다. 支給은 請求權에 依한다.

第 2 節 職業相談과 職業紹介

職業相談機關은 젊은 사람 중 大學卒業者, 專門學校學生, 大學生들에게 정차 어떤 職業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案内를 한다. 이들은 願에 따라 專門分野適性試驗을 거쳐야 한다. 職業相談者는 未成年求職者의 경우 可能한 限, 父母의 諒解下에 一定한 職業에 대한 기호와 適性에 따라 決定한 후 適切한 職業을 紹介한다.

老齡婦人 및 老年勞動者의 職業相談도 있는 비, 老齡者들은 어떤 職業, 他職業의 展望 혹은 職業教育의 기회 또는 勞動官廳의 再教育實施 등에 관한 相談을 받는다.

職業紹介所는 職業相談者와 協力한다. 이들은 雇傭의 취급, 失業發生, 轉職 및 雇傭改善에 따른 職場斡旋을 한다. 事實에 即應한 職業紹介를 通하여 모든 者는 職業을 갖게 되며 그의 適性, 기호 및 能力에 따른 活動을 하도록 한다. 職業紹介所는 이 目的을 위하여 西獨의 全勞動市場과 情報를 交換한다.

(18) 이에 대하여는 西獨勞動官廳에서 좋은 책자가 나와 있다.

第 3 節 職業教育, 補充教育 및 再教育⁽¹⁹⁾

被職業教育者는 職業訓練給與金을 받으며 基礎訓練修練者 및 職業促進訓練者도 또한 職業에 대한 對備가 目的이므로 財政的補助를 받는다. 이 補助金은 다만 兩親이나 配偶者의 收入이 一定한 限界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支給된다. 被訓練者의 收入도 計算에 넣는다.

職業補充教育은 職業上의 向上으로 困한 利益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產業知識을 適應시키고 技術的 發展에 대한 能力을 開發하고, 婦人들의 勞動生活에의 復歸를 위하여 就業내지 昇進試驗에 대비시키기 위하여, 教育勞動力의 形成을 위하여, 老年勤勞者의 職業生活에의 再編入을 위하여 勞動官廳이 추진한다.

하루종일 教育講座에 參加하는 受講生에게는 勞動官廳이 生活費를 支給하며 그것은 失業給與金보다 30~40% 가량 높아 이제까지의 總勞動賃金의 80~100%가 된다. 또한 再教育은 職業轉換이 豫定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勞動官廳이 財政負擔을 한다. 被教育勤勞者는 그와 그의 家族이 財政的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扶養費를 받는다. 이 專門的再教育이 있을 후 使用主에게는 이 새로운 從業員에 대한 採用追加金이 붙는다.

예를 들면 :

職業教育에 臨한 Peter Plümer(獨子)는 企業으로부터 100DM의 教育補償을 받았다. 그의 父親은 50DM의 交通費를 控除하고 950DM의 純所得을 올린다. 賃賃料는 170DM이다. 勞動官廳은 約 159DM의 職業教育給與金을 支給한다.

職員 Rolf Renz는 補充教育을 위하여 3個月의 全日 租稅關係세미나에 參席했다. 그의 從來의 月俸給은 實質 1,570DM였다. 그는 結婚하여 두 아들을 데리고 있다. 勞動官廳은 週 246DM의 扶養費를 支給한다. 그외에 職業教育費(수속비), 受驗費, 交通費도 別途로 支給한다.

第 4 節 職業障礙者의 職業促進

身體的, 精神的 혹은 心的障礙者는 그들이 可能한 限 그에게 適合한 職場에서 完全한 勞動給付를 增進할 수 있도록 強力한 訓練을 받는다.

障礙者는 勞動官廳으로부터 完全勤勞者와 똑같은 金錢上의 補助金을 받는다. 職業訓練, 補充訓練 및 職業再教育에 대한 援助는 財政的援助에 대한 다른 機關이 없는 限 勞動官廳이 支給한다.

勞動官廳은 障礙者를 위한 作業場 뿐 아니라 障礙者를 위한 訓練所에는 貸付뿐만 아니라 追加支給도 행한다.

第 5 節 失業保險

失業保險은 職場의 維持와 創造를 目的으로 하며 失業이 發生하였을 때 失業給與金을 支給한다.

I. 失業保險의 加入對象

失業保險에는 모든 勤勞者와 職員뿐 아니라 더 나아가 國防에 從事하거나 補充役に 從事하는 者도 義務的으로 加入한다. 다만 滿63歲이상의 勤勞者, 所得不能年金受領者 및 그외에 週勞動時間 20時間 이하로 일하는 者는 失業保險의 釀出義務가 없다.

II. 勞動官廳의 職業維持 또는 職業創出策

經濟的인 理由로 한 企業內에서 作業短縮이 있는 경우, 말하자면 一時的인 短縮의 경우 勤勞者들은 短縮勞動給與金을 받는다. 短縮勞動給與金은 短縮勞動으로 말미암아 脫落된 賃金대신 支給되는 것으로 그 額數는 거의 實質賃金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잠정적인 勞動短縮으로 상실되는 金額은 거의 없다. 一時的인 經濟的困難때문에 完全就業을 期할 수 없을 때에는 短縮勞動給與金의 支給을 通하여 勤勞者들은

(19) 1972年 4月 1日 이후 通常 最高 月 313DM가 되었다. 이 額數는 父母(양친), 配偶者 그리고 敎習者의 收入을 참작한 것이다.

職場에 머무른다.

建築業界에 있어서는 酷寒季節에 可及의 作業을 계속시킨다. 따라서 勞動官廳은 建築業界의 冬季作業造成策의 一環으로 遂行勞動의 形態에 따라 一定한 條件下에 冬季建築事業으로 因하여 支出되는 초과부담을 調整하기 위한 追加金을 支出한다. 이외에 使用主는 冬季建築事業에 쓰인 機具나 施設의 修補를 위하여 政府의 支援金과 貸付를 받는 特惠가 있다. 특히 11月에서 3月까지의 建築業界의 勞動에는 賃金에 追加하여 每勞動時間當 2DM의 冬季扶助金이 支出된다. 11月부터 3月까지 氣候事情으로 不得已 建築業을 中斷하게 되던 근로자는 그의 使用主에 대신하여 政府로 부터 不順氣候扶助金을 받는다.

聯邦勞動省은 完全就業을 위하여 追加的인 職業創造를 促進할 수 있다. 특히 老齡勤勞者를 위한 勞動機會의 創出은 매우 重要하다. 老齡勤勞者를 追加的으로 雇傭한 使用主는 失業의 豫防을 위하여 協定賃金の 50% 相當額의 追加金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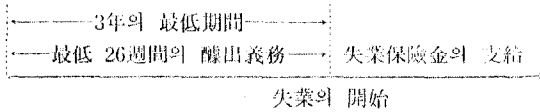
Ⅲ. 失業하고 있는 保險加入者는 失業保險金을 받는다.

1. 失業保險金の 請求權者

失業保險金을 받는 者는 失業中에 있어서 職業紹介所에 斡旋을 届出하고 期待期間을 充足시키고 官廳에 失業申告를 하고 失業保險金을 申請한 者이다.

失業者란 暫時적으로 就業하고 있지 않거나 사소한 일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職業紹介所는 各 可 및이 있는 就業에 정실히 對備하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就業을 能히 遂行할 수 있는 者를 우선 措置한다.

失業報告를 한 후 最後 3年內에 最少限 26週間 혹은 6個月間 失業保險에 있어 釀出義務가 있는 職場에 就業한 경우에는 失業保險期待期間을 채웠다고 본다(最低期間).



勞動官廳의 不利益取扱을 避하기 위하여 失業者는 자체없이 失業申告를 하여야 하며, 失業保險金을 申請한다. 申請樣式의 制限은 없다.

2. 失業保險金の 支給時期 및 期間

失業保險金은 原則적으로 失業申告日에 始作한다. 保險金은 最近 3年內에 있어서 釀出義務期間후 13, 26, 39 혹은 52週間까지 支給된다.

3. 失業保險金支給額

失業保險給與額은 基本金額과 失業者의 家族에 대한 家族手當으로 構成된다. 基本金額은 被保險者의 最近 通常週給의 40~60%가 된다. 家族手當은 1人當 週 12DM가 된다. 이것을 모두 합하는 경우 被保險者는 從來 賃金の 約 70% 내지 90%가 된다. 基本給과 家族手當은 모두 合하여 一定한 最高額을 넘어서는 안된다(職員保險法 第114條 1項).

예를 들면 :

이런 既婚勞動者가 두 아이를 두고 있으며 週實質賃金이 250DM라고 한데 失業保險一覽表에 따라 基本給은 114.60DM이며 1人當 12DM에 대한 3人分의 家族手當이 붙어 週 150.60DM의 失業保險금이 나온다.

4. 失業保險의 消滅

失業保險給與의 請求는 예를 들면 勞動賃金, 疾病保險金, 母性保險金, 傷害保險金, 所得不能으로 인한 年金과 맞서 消滅한다.

失業保險金은 被保險者가 失業의 豫防이나 除去에 대만히 한 때에는 4週間 또는 2週間の 失業保險金을 拒絶한다.

失業保險金은 失業者가 勞動官廳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6日間의 保險金이 支給되지 않는다.

**第 6 節 失業保險金の 請求權이 없는 失業者에 대한 失業扶助
(職員保險法 第134~141條).**

失業扶助請求權을 갖는 者는 失業狀態에 있어 職業紹介所에 斡旋을 手續하고 勞動官廳에 失業申告와 함께 失業扶助金申請을 하였으나 失業保險金을 申請할 수 없거나 申請할 必要가 없는 者로서 失業前 最近 數年동안에 失業保險金을 支給받았거나 아니면 最小限 10週間 就業한 경험이 있는 者이다.

失業扶助는 失業保險金과 마찬가지로 計算되나 그 料率이 약간 낮다. 失業扶助金은 時期上 制限이 없다.

第 7 節 給與受領者의 疾病 및 事故保險

失業保險金, 失業給與金 및 失業扶養費를 支給받는 者는 疾病保險에 加入義務가 있다. 그 釀出金은 聯邦政府가 負擔한다. 給與에 관하여는 第 2 章 3 節을 參照할것.

第 8 節 釀出에 依한 財源의 調達

保險財源은 거의 釀出金으로서 充當된다. 이때 그 負擔比率은 使用者와 勤勞者가 半半씩 負擔한다.⁽²⁰⁾

第 8 章 農夫에 대한 老齡扶助

農夫에 대한 老齡保險金은 原來 農業을 職業으로 하며 滿65歲 혹은 所得不能 있는 者, 그의 未亡人 및 家族에게 支給되며 保健措置(요양)도 實施되고 있다.⁽²¹⁾

이에 대한 法的根據는 農夫老齡保險法(GAL)이 있다. 이에 따라 農業 및 林業에 從事하는 使用主가 釀出하게 되어 있다.

保險主體는 農夫老齡金庫가 된다. 이에 대한 案内業務는 農業協同組合이 한다.

第 9 章 其他 社會制度

第 1 節 兒童扶助金

兒童扶助金⁽²²⁾은 첫째 2名 혹은 그 이상의 兒童을 가지며 公的財源으로부터 아무 비슷한 給與를 받지 않는 者에게 支給된다. 둘째 어린이에 대한 兒童扶助金에는 一定한 條件이 붙는다.

滿 18歲까지는 兒童扶助金이 考慮되며 學生, 職業教育修練者는 25歲까지 考慮한다. 不具兒에게는 年齡에 制限없이 兒童扶助金이 支給된다. 兒童扶助金은 申請月前 6個月동안까지 支給한다. 申請은 主務 勞動官廳에 하게 되며 보통 兒童扶助金庫가 맡는다. 所要財源은 聯邦政府가 負擔한다.

第 2 節 官吏에 대한 給與

官吏給與制는 官吏나 準官吏의 給與를 保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給與가 있다.

(1) 勤務不能이나 停年의 경우 從前 奉給의 35~75% 相當의 恩給

(20) 1972=釀出義務가 있는 純勞動賃金の 1.7%

(21) 1972.9.1=被保險者 240DM, 獨身者 160DM, 家族 80DM

(22) 1972=둘째 兒童 25DM, 셋째 兒童 60DM, 넷째 兒童 60DM. 다섯째 및 그 以上은 70DM. 平等引上이 現下 추진되고 있다.

- (2) 勤務事故 혹은 職業病的 경우 事故配慮
- (3) 死亡의 경우 遺族에 支給되는 死亡給與金, 未亡人給與金, 孤兒扶助金 등.

第 3 節 自由職業에 대한 保護

自由職業에 從事하는 者는 一部分은 職員保險制度에(예 : 예술가, 조선원, 자동차운전강사등) 一部分은 그들의 職業階級の 公法的配慮制度(예 : 의사, 치과의, 약제사)에 加入하고 있으며 一部는 生命保險에 加入하고 있다.

第 4 節 兒童을 위한 配慮制度

兒童追加金, 孤兒年金, 家族子當外에도 다음과 같은 諸配慮制度가 있다.

- (1) 賃金과 所得稅의 경우 兒童을 위한 免稅
- (2) 公共交通手段에 있어서 料金特惠
- (3) 教育制度에 있어서의 輕便한 費用免除
- (4) 職業訓練促進法에 따른 該當學生에 대한 援助(一定한 所得水準을 基準으로 함).
- (5) 一定한 財源을 通한 學生에 대한 장학금제도등.

第 5 節 戰爭희생자 配慮——軍人配慮制度

第1,2次世界大戰中 받은 身體傷害者에게 支給되는 戰傷配慮金등이 있는 法의 根據는 聯邦恩給法(BVG)이 있다.

이 配慮制度의 財源은 國庫가 負擔한다. 다음과 같은 給與가 있다.

- (1) 治療(요양포함), 疾病治療
- (2) 援護對象者의 職業教育, 再教育 및 職場의 斡旋 및 維持
- (3) 最少限 25%정도의 所得能力의 減少가 있는 경우의 負傷者年金 및 學勤扶助, 통증진경
- (4) 遺族에 대한 死亡扶助金, 未亡人, 孤兒 및 尊親年金

이 制度의 運營은 恩給廳이 맡는다.

第 6 節 社會扶助——靑少年扶助

聯邦社會扶助法(BSHG)에 따른 社會扶助는 모든 사람에게 人間다운 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해야 할 目的을 갖는다.

社會扶助는 社會保險의 給與, 가타의 社會的請求權 그리고 自己財產으로 不足한 경우 이에 대한 必要한 補助를 하는 데 있다.

生計費扶助는 通常時의 生活扶養을 保障한다. 特殊한 生活狀態에 있어서의 扶助는 財源調達이 不豫測的인 경우라 할지라도 언제나 배풀어진다(例 : 疾病, 老齡職業教育, 장애, 위령). 이 扶助金은 原則的으로 償還하지 않는다.

社會扶助는 그에 앞서 豫防을 철저히 해야 한다.

社會扶助當局(社會官廳, 州社會官廳)은 自由福祉機構(자선기관등)와 서로 協力하여 業務를 遂行한다.

靑少年扶助制度는 靑少年福祉法(JWG)에 依據하여 靑少年들의 教育請求權을 保障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靑少年官理廳, 任意團體 및 保健廳이 靑少年扶助를 맡아 본다.

第 7 節 住宅扶助

住宅扶助金은 住宅扶助法(WOGG)에 따라 家族이나 獨身者가 勤少한 收入으로 알맞은 住宅이나 住宅所有 財源을 마련토록 하는 것을 保障하기 위한 것이다. 住宅扶助金은 申請에 따라 貸貸家屋에 대한 貸貸追加金으로서 혹은 負擔追加金으로서 支給된다. 負擔追加金은 一家族專用家屋이나 自己家屋에 대

하여支給된다. 보통 이것은 地域自治機關이나 都市行政機關이 관장한다.

8. 負擔調整

負擔調整法은 特히 自然人이 追放, 亡命, 戰爭에 의한 物的損害 혹은 貨幣改革으로 因하여 받은 財產的損害를 調整하기 위한 目的을 가지고 있다. 飢餓민들도 이의 保護對象이 된다. 申請과 案內는 地方調整官廳이 맡고 있다.

第 8 章 社會裁判所의 節次

社會裁判所는 聯邦社會裁判所, 州地方裁判所가 있다. 이 裁判所는 社會裁判所法(SGG)에 따라 農夫에 대한 老齡扶助, 失業保險, 聯邦勞動官廳의 諸課業을 포함한 社會保險과 兒童扶助法 및 戰爭희생자 援護등의 諸分野에 있어서의 法的 紛爭關係를 관할한다.

訴訟當事者(原告, 被告, 證人)은 節次上의 全權을 가진 代理人(변호사)을 通하여 訴訟을 續行한다. 다만 聯邦社會裁判所만은 指定辯護人을 通한 訴訟代理制度(강제)가 있다.

當事者는 法的聽聞權을 가지며 書類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州社會裁判所와 聯邦社會裁判所는 當事者와 協力하여 職務上 事實을 確認한다. 따라서 또한 法律知識이 없는 者와 書類에 未熟한 者도 請求權의 存在를 분간할 수 있다.

疾病, 失業, 鑛山保險과 戰爭희생자援護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訴願申請(Vorverfahren)을 거쳐야 한다. 一個決定(抗辯決定)에 대한 訴는 社會裁判所의 경우 文書送達 혹은 書記의 書類作成후 1個月이 내에 提起되어야 한다. 다만 訴訟이 一社會保險當局이나 다른 州官廳에 의하여 提起되는 경우에는 1個月이란 期間으로 充分하다.

法律上 혹은 經濟上으로 重要한 紛爭에 있어서 社會裁判所의 裁判에 不服하는 경우에는 書類送達이 있는 후 1個月이내에 州裁判所가 控訴한다.

州裁判所의 判決에 대한 聯邦社會裁判所의 再審은 특히 중요한 法律問題나 裁判節次上의 重要한 結果가 있는 경우에 局限된다.

裁判所의 手續節次는 原則적으로 手續經費가 免除된다. 그러나 訴訟當事者는 특히 辯護費用과 惡意로 提起한 訴訟費用을 부담한다.

裁判所는 裁判節次가 上訴나 和解 및 認知에 의하여 解決되지 않을 때에는 訴訟은 原則적으로 口頭辯論으로 決定한다.

附錄; 職業訓練促進法(BAföG)에 따른 給與

I. 原 則

特定한 職業教育過程의 受習生이나 學生은 그들이 生計와 教育上 必要財源이 不足하다고 생각된 때에는 1971年 8月 26日의 聯邦職業訓練促進法에 따라 하나의 給與請求를 申請할 수 있다.

請求申請은 地方勞動官廳職業教育擔當者앞으로 한다. 給與는 最大限 申請月の 以前 3個月부터 支給한다. 이 職業教育은 二元的(企業單位와 學校單位)인 職業訓練, 補充訓練 및 再教育등으로 나누인다. 이외에 職業專門學校의 卒業生을 위한 強化教育은 1971年 9月 2日의 學位促進法(Gradvierungsförderungsgesetz)에 따라 實施하고 있다.

II. 教育對象

다음과 같은 訓練生은 職業教育促進法에 따라 申請에 依한 給與請求權이 있다.

- (1) 人文高等學校 및 專門高等學校 2級以上の 學生(마이에른, 그레겐에서는 10級부터)
- (2) 夜間大學, 職業養成所, 夜間實業學校, 夜間人文高等學校, 學院 및 類似한 教育機關의 學生
- (3) 專門職業學校 學生으로서 實課專門教育 혹은 비슷한 豫備教育課程의 學生
- (4) 初級專門職業學校 및 實科大學生
- (5) 大學生(專門大學도 포함)

- (6) 一定한 通信教育課程의 學生(수강생)으로서 施設教育 a에서 e級을 마친 자
- (7) 위에서 말한 教育實習場에 다니면서 實習을 하고 있는 實習生(연구생도 포함)
- (8) 특히 農業과 生物技術職業에 從事하는 治療補助業을 위한 학교의 學生
- (9) 大學準備生(學院生도 포함)
- (10) 기타 公認된 私立學校(大學)의 學生
- (11) 外國에 留學하는 中·高 大學生 등

Ⅲ. 職業教育促進額의 程度

月需要額(促進金)은 다음과 같다.

學 生 區 分	兩親의 生存	兩親 없는 學生
專門職業教育을 必要로 않는 一般人文系, 職業專門學校高等技術學校	160DM	320DM
專門의 職業教育, 夜間職業學校, 職業養成學校, 夜間實科學校	320DM	380DM
技術專門學校, 夜間人文高等學校 및 學院	320DM	400DM
大學專門技術課程, 아카데미 및 大學	340DM	420DM

加算金計算은 同意當時 被教育者의 收入, 配偶者 또는 父母의 實質所得에 比例하여 需要額을 減額하는 式으로 한다. 被教育者가 純所得 75~125DM + 코아연금 90DM인 경우에는 減額은 없다. 또 兩親이나 配偶者의 純所得이 減額免除되는 限界는 기초공제금액(대개 부모의 경우 實所得 800DM, 配偶者의 경우 500DM, 여기에 職業教育該當兒童마다 50DM, 경우에 따라서는 15歲以下 200DM, 15歲以上은 270DM까지 追加)과 이 기초공제금액을 넘는 금액도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每兒童當 5%를 한신하여 40%까지 減額控除된다. 要컨대 父母의 所得이 높더라도 職業教育을 받게 되는 兒童이나 부양할 兒童이 많은 경우에는 그 減額基礎控除額이 높아진다. 이 關係를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예를 들면 :

15歲, 16歲 및 18歲의 세아이를 가지고 있는 夫婦의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는 技術學校에 갈 수 있다. 父母의 純所得=1,600DM, 父母의 基礎控除額=800DM+직업교육가능아동 50DM+15歲 이상의 追加兒童마다 270DM, 이것을 모두 합하여 1,390DM가 된다. 210DM란 上昇純所得은 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관계로 55% 免除되어 115.50DM가 된다. 따라서 加算可能金額은 94.50DM이다. 따라서 受習生인 兒童이 父母와 함께 사는 경우 教育에 드는 수요액은 320DM이고 追加金은 225.50DM로 된다.